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발간사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사태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위험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위험으로부터 각종 산업의 최종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보험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은 빌딩, 공장, 선박, 인공위성, 배상책임 등의 거대한 보험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으나 국내외 산업의 최종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적 재보험사로서 1963년 설립된 이래 한국 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코리안리는, 재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재보험 교재를 발간해왔습니다.

본 교재는 특히 재보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 증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0년 최초로 발행되었습니다.(주:발간 당시 제목은 <알기 쉬운 재보험>)

이후 (재)보험 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몇 차례 개정작업을 거쳤으며, 그동안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재보험에 관심 있는 일반인 독자분들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재보험 산업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위험에 따라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서는 전통적인 재보험과 대비되는 새로운 위험전가 방식인 대체위험전가(ART) 파트가 더욱 보강되는 등 트렌드를 반영한 개정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재보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보험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코리안리 대표이사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주요 연혁

1963 - 1977
설립 및 개척

- **1963.3.19**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창립

- **1969.10.23**
  동경주재사무소
  설치 승인

1978 - 1997
성장 및 도전

- **1978.3.2**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 전환

- **1978.11.24**
  싱가포르 지점 영업개시

- **1979.9.15**
  제1차「코리안리 세미나」개최

- **1984.6.28**
  사옥 이전 (종로구 수송동 신축 빌딩)

- **1995.12.18**
  제2창업 선언 결의대회

- **1996.12.31**
  총 자산 1조원 돌파

- **1997.4.1**
  한국 재보험시장 개방

1998 - 2013
혁신과 도약

- **1999.5.27**
  중장기 발전전략 'Vision 2020' 선포

- **2001.1.4**
  제10회 한경 다산금융상 수상

- **2001.10.12**
  아시아 1위 재보험사로 선정(S&P)

- **2002.5.28**
  A.M. Best* 신용등급평가
  A-등급 획득
  *보험사 신용평가기관

- **2002.6.27**
  코리안리재보험으로 사명 변경

- **2002.10.20**
  <Asia Insurance Review> 기관 선정
  2002 아시아 보험산업 대상 수상

- **2002.10.31**
  총 자산 2조원 돌파

- **2006.12.6**
  S&P 신용등급평가 A-로 상향 및
  등급전망 안정(Stable) 획득

1998 - 2013
혁신과 도약

2014 -
전진

2006.12.31
총 자산 3조원 돌파

2008.2.28
총 자산 4조원 돌파

2008.4.8
두바이주재사무소 개설

2008.4.15
자회사 코리안리
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2010.5.18
<Reinsurance>
2009 Emerging Market Player 선정

2011.2.22
A.M. Best 신용등급평가
A로 상향조정

2012.4.27
코리안리원정대 히말라야
칼라파타르봉 전원 등반 성공

2012.4.30
총 자산 7조원 돌파

2012.9.11
A.M. Best사 선정
세계 10대 재보험사 등극

2013.3.19
창립 50주년 행사

2013.6.17
원종규 대표이사 취임

2013.8.26
A.B. Best 사 선정
세계 9대 재보험사 등극

2014.1.2
'Vision 2050' 선포

2014.10.24
S&P 신용등급평가 A로 상향 조정

2015.4.1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 영업개시

2017.7.1
말레이시아 라부안 무인지점
영업개시

2017.12.29
두바이지점 영업개시

2019.6.1
KRSA(스위스 법인) 영업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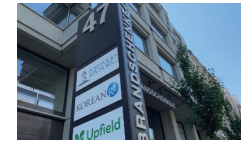

2020.1.13
상해 지점 영업개시

2020.2.17
보고타주재사무소 설치 승인

CONTENTS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A
재보험 이론 및 실무

Ⅰ. 재보험 개요
1. 재보험의 개념 및 필요성 12
2. 재보험의 역사 14
3. 재보험의 기본 원리 15

Ⅱ. 재보험 방법
1. 재보험 분류 18
2. 재보험 거래 유형에 따른 분류 19
3. 책임분담 방식에 따른 분류 21

Ⅲ. 재보험 처리 과정
1. 특약재보험 처리 절차 32
2. 임의재보험 처리 절차 33

Ⅳ. 재보험 요율
1. 보험료 산정 기본 원리 35
2. 국내 손해보험 요율 현황 37

Ⅴ. 보험 이해 관계자 39

Part. B
보험시장 현황

Ⅰ. 세계 원보험시장
1. 수입보험료 규모 44
2. 주요국가 성장률 45

Ⅱ. 세계 재보험시장
1. 재보험시장 규모 46
2. 재보험시장 현황 47
3. 국가별 재보험시장 특성 48

Ⅲ. 세계 주요 사고 현황 56

Ⅳ. 재보험시장의 경기 변동 57

Ⅴ. 한국 보험시장
1. 한국 원보험시장 현황 58
2. 한국 재보험시장 현황 60
3. 한국 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역할 61

Part. C
재보험 법규

재보험사 Listing 제도
1. 개요 66
2. 재보험사 Listing 기준 66
3. 재보험사 Listing 업무 절차 69
4. 재보험사 List 조회 71

Part. D
대체위험전가

Ⅰ. ART의 개요 74

Ⅱ. 대체위험전가
1. 금융재보험 76
2. 보험연계증권 79

Ⅲ. 대체위험재무관리
1. 대체위험재무관리의 개요 82
2. 대체위험재무관리의 종류 82

Part. E
문답으로 보는 재보험

1. 우리나라는 왜 자국 대형 재보험회사를 보유해야 하나요? 88
2. 한 국가에 재보험회사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89
3. 재보험사들에게 신용등급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90
4. 보험회사·계약자들에게 재보험사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91
5. 계약자 및 원보험회사들이 코리안리를 재보험사로 이용할 때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92
6. 코리안리는 독점 기업인가요? 93

Part. F
주요 재보험 용어 및 Wording

Ⅰ. 주요 재보험 용어 96

Ⅱ. 주요 재보험 Wording 107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A

재보험
이론 및 실무

Ⅰ. 재보험 개요
Ⅱ. 재보험 방법
Ⅲ. 재보험 처리 과정
Ⅳ. 재보험 요율
Ⅴ. 보험 이해 관계자

I

재보험 개요

1. 재보험의 개념 및 필요성

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관련 보상책임(Indemnity Liability)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를 원보험사(Primary Insurer),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위험을 전가받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사(Reinsurer)라고 합니다.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을 전부 보유(Retention)하거나 그 일부를 다른 재보험사에게 다시 전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재재보험(Retrocession)이라 하고 동 재보험계약의 인수자를 재재보험사(Retrocessionaire)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 상 보상책임(報償責任)의 일부를 재보험계약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재보험거래를 수재(受再)라고 합니다. 이 때 재보험을 출재하는 회사는 출재사(出再社), 재보험을 수재하는 회사는 수재사(受再社)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해 여름에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대형 선박들이 침몰하고 건물들이 침수되는 등, 다양한 사고에 의해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들이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일 때 보험회사는 단일 손해 원인(태풍)으로 인해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사에게 지급하고 태풍 사고로 지급하게 될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기로 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위한 보험

재보험의 정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서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보험과 재보험

원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보험의 역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 위험 또는 신종 위험의 인수가 어려워진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보험의 사회보장적인 공익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원보험사는 대형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위험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원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재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1.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시켜 경영 안정성 도모 (Spread of risk)

동질적인 위험집단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은 그 빈도와 손해의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예기치 못한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보험영업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에 따라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보상책임(報償責任)을 전가 시킴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인수 능력 증대 (Increase of capacity)

보험회사는 자사의 제한된 담보력으로 인하여 대형 위험 등 특정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가 불가능할 때 보험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담보력의 부족 문제를 재보험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인수한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을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 위험을 인수할 수 있어 사업의 확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보험계약자 보호 (Protection of insured)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복구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적절한 재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재보험사가 인수한 책임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신상품 개발 지원 (Support of New Product)

원보험사가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 신상품 개발 경험이 많은 재보험사는 관련 데이터 및 유사 상품 개발 경험을 원보험사에게 제공하여 신상품 개발에 따른 경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2. 재보험의 역사

재보험은 위험 분산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험 사업의 초기단계에는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보험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재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공동보험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재보험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370년 이탈리아의 Genoa로부터 네덜란드 Sluys까지의 항해에 대한 해상보험 증권이 발행되었던 때이며, 그 중 스페인의 Cadiz로부터 최종 목적지인 Sluys까지의 항해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구간의 항해에 대한 위험을 다른 재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부가계약을 체결한 바, 이는 오늘날의 재보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의 초창기에도 재보험의 필요성은 존재했을 것이지만 보험회사의 규모나 원보험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19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산업화와 함께 대형 계약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재보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원보험사들이 재보험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재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업재보험사의 효시는 1846년에 설립된 독일의 Cologne Reinsurance Company입니다. 그 후 스위스에서는 1861년 발생한 Glarus 화재 참사 이후에 재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년 뒤인 1863년 Swiss Reinsurance Company가 설립되었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에 여러 개의 재보험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법률적인 장벽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전업재보험사가 설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국제적으로 재보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보험이 취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에 걸쳐 파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보험시장은 경쟁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3. 재보험의 기본 원리

재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이익의 손해에 대한 일종의 책임보험이며, 보험을 위한 보험으로서 위험분산, 국제성, 전문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원보험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점에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 공동 운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상법상 별도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원보험사는 재보험계약시 최대 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 재보험계약의 인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재보험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재보험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1. 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책임보험입니다

재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으로서 재보험사가 원보험사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책임보험계약입니다. 재보험사의 책임은 재보험계약의 한도 내에서 출재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법에서도 재보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제5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

2. 재보험을 통해 대형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원보험사가 담보력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위험 또는 특정 위험에 대한 단독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사에게 전가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의 보험'을 통해 원보험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대형 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재보험으로 인수된 위험은 국제적으로 분산됩니다

특정 국가의 원보험사가 인수한 대규모 산업시설과 같은 대형 위험의 경우 해당 국가 내의 담보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 재보험 시장으로부터의 대규모 담보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보험시장을 경유하여 다수의 재보험사에게 위험이 분산되는 재보험 거래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제수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재보험은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재보험 거래는 그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수 여부의 판단이나 재보험 요율 결정 및 계약 방식도 다양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1.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계약입니다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원보험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661조) 이에 따라 원보험사는 원보험료의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이 없다고 해서 재보험사는 직접 원보험계약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원보험계약자는 원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와 공동 운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의 업무처리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재보험계약에는 이러한 취지의 이른바 공동운명조항(Follow the fortunes clause)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원보험사가 부담하는 책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보험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원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재보험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운명의 원칙 적용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원보험사의 최대 선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재보험계약에서도 최대 선의(Utmost good faith)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보험사는 재보험 출재 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을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사실이란 재보험 인수 여부 결정이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4.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재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손해보상 계약이므로 재보험사의 책임은 재보험계약 한도 내에서 원보험사, 즉 출재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혜지급(Ex-gratia payment)에 대해 재보험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보험 방법

1. 재보험 분류

출재사가 인수한 책임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법은 '재보험 거래 유형'과 '책임 분담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재보험 거래 유형의 차이에 따라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으로 구분되며, 출재사와 재보험사 간의 책임 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재보험 거래 유형에 따른 분류	재보험 책임 방법에 따른 분류
• 특약재보험 (Treaty Reinsurance) • 임의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	• 비례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 비비례재보험 (Non- Proportional Re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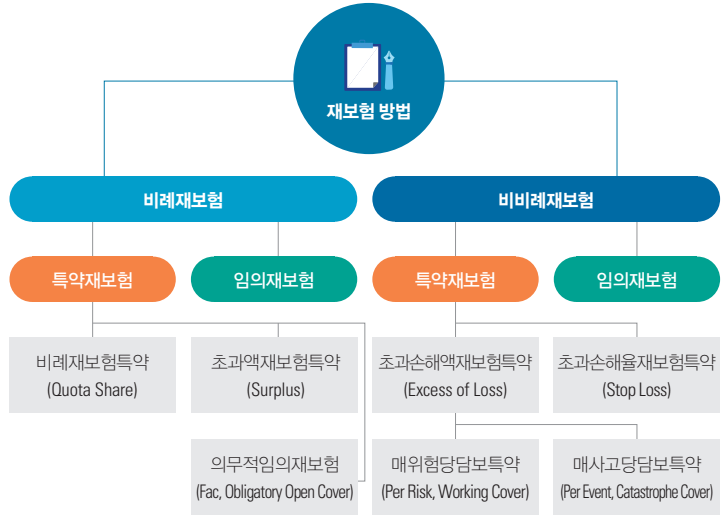

2. 재보험 거래 유형에 따른 분류

가. 특약재보험 (特約再保險, Treaty Reinsurance)

특약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 간에 미리 출재대상계약의 범위, 재보험사의 책임한도액, 재보험 처리방법 등 기본적인 재보험 거래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일정기간(통상 1년)동안 양측의 재보험청약과 인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법입니다. 따라서 특약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출재사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언더라이팅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특약재보험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재보험의 형태, 담보 보험 종목
2) 특약의 개시, 종료 일자
3)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관련 조항
4) 특약에서 제외하는 위험의 형태
5) 분쟁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조항

장점

① 임의재보험에 비하여 재보험 처리에 소요되는 사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② 자동적으로 재보험 담보가 제공되므로 원보험계약의 인수 부담이 적습니다.
③ 재보험사 입장에서 출재사의 선별적 출재, 즉 역선택의 위험이 적습니다.

단점

① 재보험자는 매 계약별 담보위험 한도에 따른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유재량권이 없습니다.

나. 임의재보험 (任意再保險, Facultative Reinsurance)

임의재보험은 가장 오래된 재보험 방법으로 출재사가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개별 계약 마다 재보험사에게 청약을 하고, 재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재보험으로 출재되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약 제외 위험

특약재보험에서 위험의 특성상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을 출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출재사는 임의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 특약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손해율이 높은 특정 위험의 경우 특약 실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재사 특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의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위험

특약에서 제공하는 담보력 한도를 초과하는 대형 위험인 경우 부족한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재보험으로 출재합니다.

• 신규 위험

출재사가 신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때 과거 통계자료가 없어서 향후 손해율 등 실적 예측이 어려운 경우 특약 담보력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임의재보험으로 출재합니다.

• 초대형 일회성, 단기성 위험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단기성 초대형 행사 위험의 경우 임의재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장점

① 원보험사가 계약 건 별로 자사의 보유 및 보험 조건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형 위험 또는 신규 위험에 대해 다수의 재보험사에게 출재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인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점

① 재보험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② 출재사는 특약재보험에 비해 재보험사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③ 자동 재보험 담보가 없으므로 재보험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원보험사는 자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④ 재보험사는 요율 및 보험 조건을 별도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분담 방식에 따른 분류

가. 비례재보험 (比例再保險, Proportional reinsurance)

비례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출재사 보유액과 재보험사 인수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각자의 책임액이 산출됩니다. 대표적인 비례재보험은 출재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과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reinsurance treaty)으로 구분됩니다.

1) 비례재보험특약 (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

비례재보험특약은 출재사가 인수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그 초과분은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출재된 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료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출재사와 재보험사 간에 배분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출재사와 재보험자가 이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이처럼 비례재보험특약에서는 출재사가 인수한 위험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자동 출재되므로 출재사는 사무 처리가 매우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재보험사 측면에서도 인수한 위험에 대한 역선택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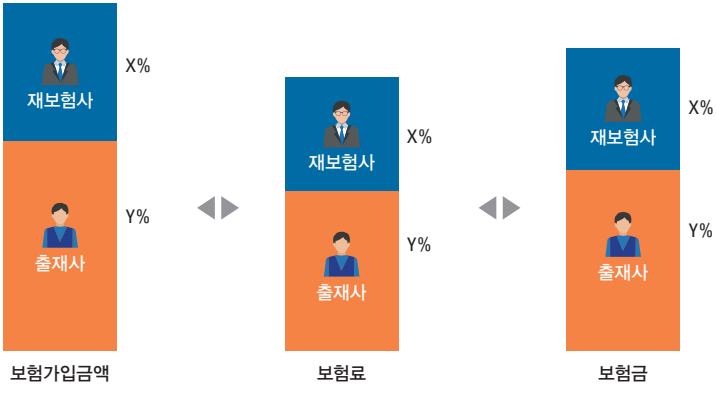

장점

① 특약 운영이 쉽고 업무처리가 간편합니다.
②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역선택의 위험이 없으므로 다른 종류의 비례재보험들에 비해 더 광범위한 특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출재사는 높은 재보험수수료 등 보다 유리한 재보험 조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

① 다른 종류의 비례재보험에 비해 재보험사가 출재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커질수록 출재사의 보유액 역시 증가하므로 출재사 입장에서 누적 위험 및 대형 손해에 대해 적절한 담보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Case Study 1

출재율 80%, 특약한도액 100억원인 비례재보험특약(Q/S)

X라는 출재사가 100억원을 특약한도액(Treaty Limit)으로 하는 80%의 비례재보험특약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X사는 인수한 계약 A, B, C, D 각각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의 20%를 보유하고 잔여분 80%를 재보험사에게 출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A의 경우 전체 보험가입금액 60억원 중 20%인 12억원은 출재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48억원은 재보험사에게 자동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가입금액이 30억원인 계약 B, 50억원인 계약 C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례재보험특약에 출재합니다.

그러나 계약 D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특약한도액인 100억원까지만 출재가 가능하고 특약한도액을 초과하는 50억원은 출재사가 별도로 임의재보험으로 출재하거나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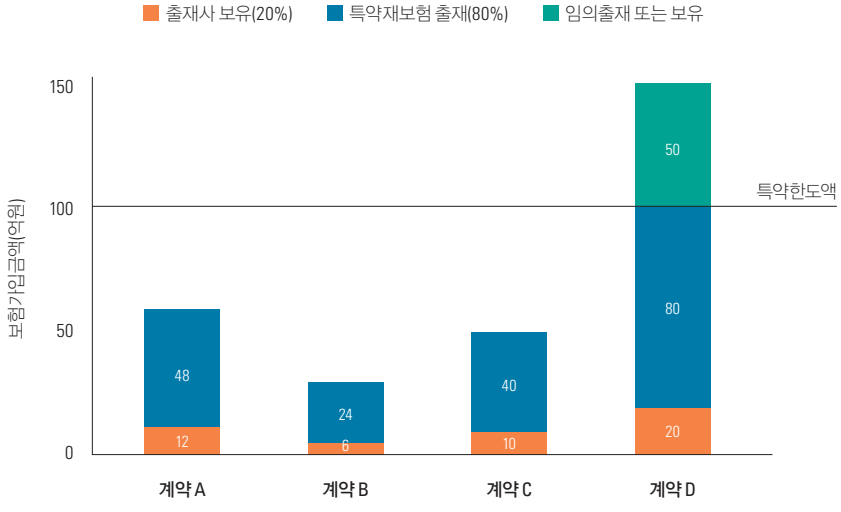

2) 초과액재보험특약 (Surplus reinsurance treaty)

초과액재보험특약은 출재사가 출재 대상인 개별 계약에 대하여 자사의 보유한도액(Line)을 미리 정한 후에 동 보유한도액의 일정 배수를 특약한도액으로 정하여 출재하는 재보험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10 Line의 초과액재보험특약은 출재사 보유한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재보험 특약한도액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Line 초과액재보험 출재 특약을 가지고 있는 원보험사의 보유한도액이 1억원이라면, 출재특약한도액은 10억원이 되므로 원보험사는 총 보상한도가 11억원인 계약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보험사가 보험가입금액이 100억원인 계약을 인수하여 10억원을 보유한 후 보유 초과금액인 90억원을 재보험사에게 출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원보험금 50억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볼 때, 초과액비율은 보유초과비율인 90%가 되므로 원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보험금의 90%에 해당하는 45억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재사는 대형 위험 인수를 위하여 여러 개의 초과액재보험특약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으며 담보력 제공 순서에 따라 1차, 2차, 3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점

① 출재사는 건별로 보유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유하는 위험의 규모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보유 포트폴리오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고 영업 실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출재사는 양질의 위험과 불량 위험에 대한 차별적인 보유를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점

① 출재사가 양질의 위험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불량 물건을 인수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② 비례재보험특약과 달리 보유 결정에 대한 출재사의 전문적인 언더라이팅 기술이 요구됩니다.
③ 재보험사의 역선택 위험이 커지므로 출재사는 비례재보험특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보험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Case Study 2

출재사 보유한도액(1 Line: 10억원),
1차 초과액특약이 10 Line, 2차 초과액특약이 5 Line인 경우

X라는 원보험사가 10억원을 1 Line으로 하는 10 Line 1차 초과액재보험특약(1st Surplus Treaty)과 5 Line 2차 초과액재보험특약(2nd Surplus Treaty)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인수한 계약 A, B, C, D 모두에 대해 원보험사가 보유해야 하는 금액은 1 Line에 해당하는 10억원입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약 C(6억원)와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사 출재 없이 전액 원보험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D와 같이 10억원을 보유하고 10 Line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1차 초과액재보험특약에 출재했음에도 50억원의 추가 담보가 필요한 경우 2차 초과액재보험특약에 출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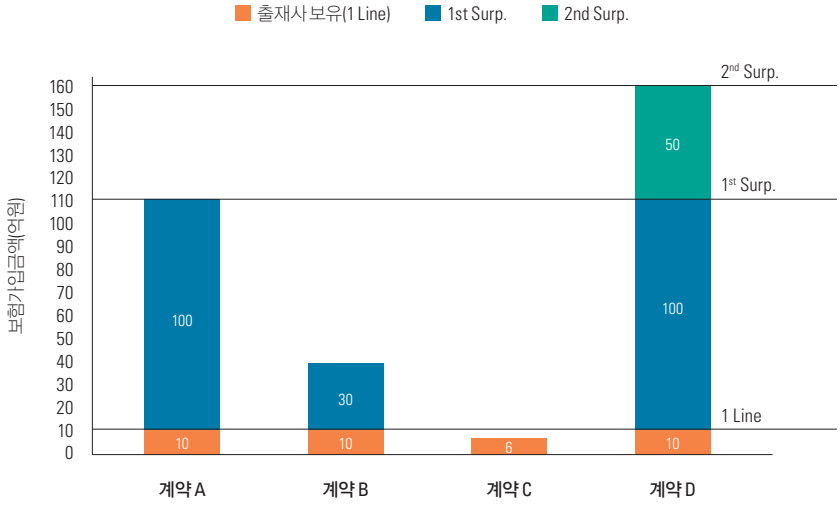

3) Quota Share & Surplus Combined Treaty

비례재보험특약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비율을 보유 및 출재하며,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액재보험특약 방식으로 재보험사에 위험을 출재하는 방식입니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초과액재보험특약만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Treaty Balance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Facultative Obligatory Treaty

임의재보험의 성격을 지닌 재보험특약으로 출재사의 입장에서는 특약 출재 대상이 되는 개별 계약에 대한 출재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Facultative), 재보험사는 출재사가 출재한 보험계약을 반드시 인수할 의무가 있는(Obligatory) 재보험 방식입니다. 따라서 Facultative Obligatory Treaty를 체결하는 재보험사는 역선택의 위험을 감안할 때 출재사의 언더라이팅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출재사 입장에서 이 특약은 유연한 재보험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비비례재보험 (非比例再保險, Non-Proportional reinsurance)

비비례재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 만을 재보험사가 책임지게 되고, 재보험료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해지므로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액과 보험료 사이에 어떠한 비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재보험료는 대상 계약의 보험료 총계에 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보험료와 보험금의 출재 비율은 서로 다릅니다.

초과손해액 비비례재보험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의 책임을 분할하여 미리 자기부담금(Excess Point)과 재보험사의 책임한도액(Limit)을 약정해 두는 방법으로, Excess of Loss Cover(E.L.C) 또는 XOL

Cover라고도 합니다. 초과손해액 비비례재보험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매 위험당 비비례재보험 (Per Risk Cover)	매 사고당 비비례재보험 (Per Event Cover)
재보험사의 위험에 대한 담보가 매 위험(Per Risk)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재산보험에 사용됩니다.	재보험사의 위험에 대한 담보가 매 사고(Per Event or Occurrence)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대형재해위험에 사용됩니다.

매 위험당(Per Risk Cover)인 경우 출재사는 특약에 출재된 개별 원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재보험금을 청구하며, 매 사고당(Per Event Cover)의 경우에는 1건의 사고로 인하여 특약에 출재된 다수의 원보험 물건이 입은 손해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재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재사의 자기부담금(Excess Point)이 20억원인 경우 5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하면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할 보험금은 30억원이 됩니다.

한편 초과손해율 비비례재보험(Stop Loss Cover)은 초과손해액 비비례재보험(Excess of Loss Cover)과 달리 특약기간 중 출재된 계약들의 전체 손해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사가 해당 초과분을 사전에 합의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출재사의 연간 보험인수 영업실적을 안정화하기 위한 재보험 방법으로 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에 사용됩니다.

비비례재보험 방식은 보험 물건별로 보유액과 출재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무처리비용이 적게 들고 거대위험이나 대형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누적위험을 담보하는 데 적절하며 보유보험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수준의 보유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됩니다.

Case Study 3

출재사 자기부담금(Excess Point) 20억원
1st XOL : 20억원 초과 30억원(30억원 xs 20억원)
2nd XOL : 50억원 초과 50억원(50억원 xs 50억원)

X라는 출재사가 20억원을 자기부담금(Excess Point)으로 하고 20억원 초과 30억원을 담보하는 1차 XOL 특약, 50억원 초과 50억원을 담보하는 2차 XOL 특약을 운영 중일 경우, 보험손해액 20억원 이하의 사고는 출재사가 모두 부담하고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C와 같이 손해액이 15억원이라면 X사는 재보험사로부터 회수 금액없이 15억원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사고 A와 같이 손해액이 40억원인 경우 20억원을 1차 XOL 특약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B와 같이 손해액이 8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 초과 30억 원까지는 1차 XOL 특약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30억원은 2차 XOL 특약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 D처럼 손해액이 1, 2차 XOL 특약 총 한도액인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출재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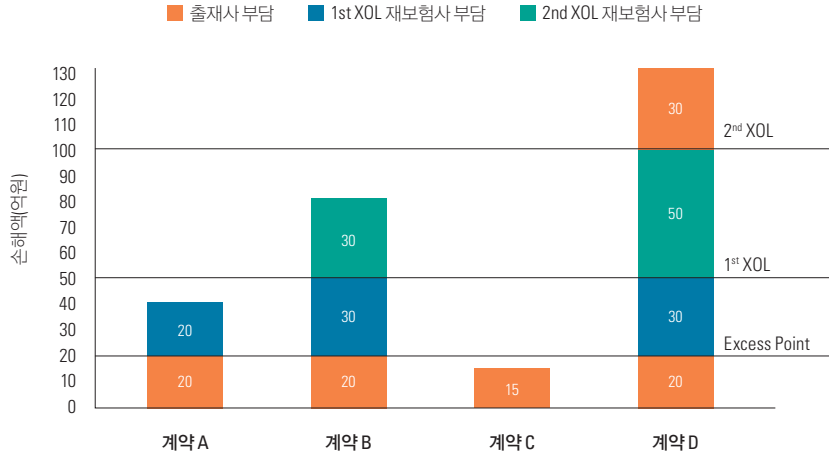

비비례재보험특약에서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의 정의 (Definition of Loss Occurrence)

재산보험의 Catastrophe Excess of Loss Cover에 포함되는 규정으로서 폭풍, 지진, 해일,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사고 개시 후 어느 시점까지를 하나의 사고로 책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리케인, 태풍, 토네이도,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72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사고로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72 Hours clause).

• 복원조항 (Reinstatement Clause)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재보험금 지급으로 특약기간 중 보상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진될 경우 출재사는 소진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하여 추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복원횟수는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복원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약 보상한도액의 일정 배수로 제한됩니다.

• 요율 산출

비비례재보험 특약의 특징 중 하나는 해당 특약을 위한 요율이 산정되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요율 산출 방식은 과거 데이터의 활용 여부, 모델링과 시나리오의 활용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율 산출 방식

구분		모델링 여부	
		YES	NO
과거데이터 사용 여부	YES	Loss Model	Burning Cost
	NO	CAT Modeling	Exposure Rating

① Burning Cost 방식

Working Cover 등 비교적 재보험금 회수빈도가 높은 초과손해액 비비례재보험 재보험료 산정에 이용됩니다. 전년도 사고경력을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초과손해액 비비례재보험의 과거 회수금액 총액을 동일한 기간 중의 GNPI (Gross Net Premium Income)로 나눈 숫자에

일정한 안전할증을 부과하여 재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 Layer Attach 된 사고가 없다면 요율 산출이 안됩니다.

② Loss Model 방식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되 확률분포에 Modeling,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의 시나리오를 만든 뒤, Burning Cost와 같은 방식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과거에 Attach 된 사고가 없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를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Exposure Rating 방식

원수계약의 보험료가 제대로 산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XOL의 공제 및 한도 조건을 적용하면 원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 대비 어느 정도의 손해가 경감될 것인가 하는 비율을 산출한 후, 거기에 GNPI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④ CAT Modeling 방식

현재 Exposure, 보상하는 위험 등의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자연재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사고 데이터를 받아 Loss Model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재해를 직접 모델링,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받아 사용하므로 과거 손해가 없는 CAT XOL도 요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재보험 처리 과정

일반적으로 재보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재보험계약의 시작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원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원보험사는 인수한 위험(Risk)의 정도를 심사해 자체 보유액을 결정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사와의 재보험계약에 따라 출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특약(Treaty)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자동 출재로, 그 외 추가적인 재보험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임의(Facultative)재보험으로 출재가 이루어집니다. 위험을 인수한 재보험사는 보유한도액 내에서 일정금액을 보유하고, 잔여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재보험사에 재재보험(Retrocession)으로 다시 출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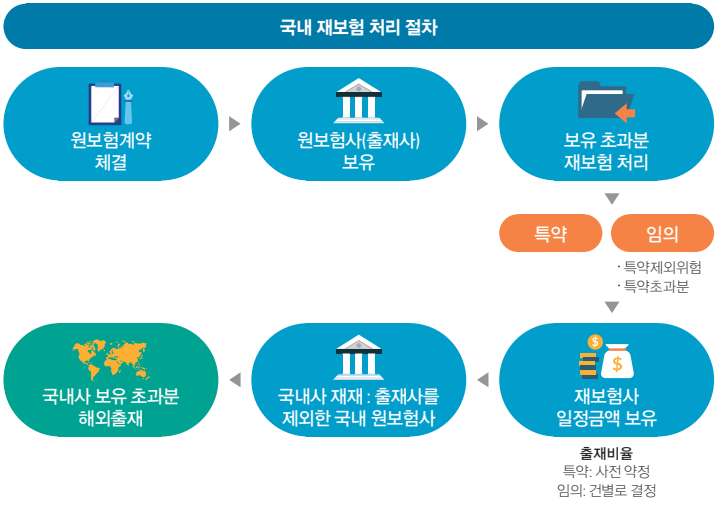

1. 특약재보험 처리 절차

가. 재보험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출재사는 특약재보험으로 출재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 재보험수수료(Commission), 특약기간, 담보조건, 특약운영실적 및 출재사의 언더라이팅 정보 등을 기재하여 특약재보험청약서(Treaty Reinsurance Slip)를 재보험사에게 송부합니다. 재보험 특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나. 재보험 인수 심의(언더라이팅)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험사는 출재사로부터 접수한 특약재보험청약서를 기반으로 특약구조, 인수 물건의 범위 및 위험도, 수수료 수준 및 기존 특약 실적 등을 심의한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험사가 특약 참여에 합의하게 되면 특약조건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자동적인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집니다.

재보험사와 출재사는 확정된 최종청약서에 날인한 후 한 부씩을 교환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고, 특약기간 중 담보조건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출재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재보험사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다. 분기별로 출재사와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을 청산합니다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청산은 출·수재사간에 체결된 특약의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명세서를 보내거나 정산된 계수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대차청산을 실시하고 특약기간(1년)별로 이익수수료(Profit Commission) 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특약재보험의 경우 재보험금은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정산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재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재사의 요청에 따라 재보험사가 재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데 이를 즉시불보험금(Cash Loss)이라고 합니다.

2. 임의재보험 처리 절차

가. 재보험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출재사는 임의재보험으로 출재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조건을 기재하여 재보험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물건(Risk), 보험금액(Total Sum Insured), 담보조건(Policy Condition), 보험요율(Premium Rate), 수수료(Commission) 등입니다. 출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 인수에 중요한 사실을 재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재보험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재보험청약서 기재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재보험 인수 심의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험사는 출재사로부터 접수한 재보험청약서를 기반으로 인수 위험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위험의 종류, 보험료, 손해율, 담보조건 등을 살펴본 뒤 인수 여부와 인수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재사에 통보하고 재보험청약서에 서명한 재보험인수증(Reinsurance Certificate/Cover Note)을 송부 합니다. 재보험 출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출재사는 재보험사에게 서면 통보 후 최종 청약서(Closing Instruction)로 확정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 재보험사에게 재보험료를 송금합니다

계약 인수가 확정되면 출재사는 재보험사에게 계산서를 송부하고 해당 재보험료를 합의된 기한 내에 송금하여 청산합니다.

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사고 통지를 재보험사에게 통보합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는 즉시 출재사는 사고 발생을 재보험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사고원인, 사고일시, 예상손해액 등의 주요 내용을 명기하여 사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마. 확정된 재보험금에 대해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기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후 사고 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보험금(Settled Claim)을 명기하여 재보험사에게 재보험금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바. 출재사에게 재보험금을 송금합니다

재보험사는 재보험금 청구서 접수 후 합의된 기한 내에 책임 금액을 출재사에 송금하여 청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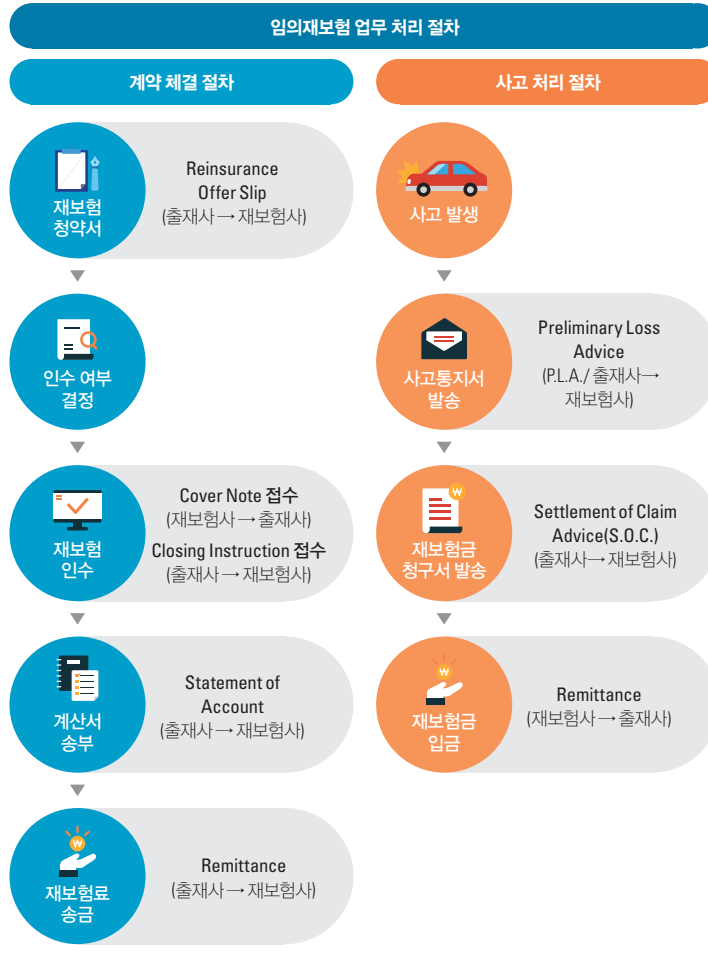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IV

재보험 요율

1. 보험료 산정 기본 원리

보험은 다수의 경제객체들의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 동질의 위험을 갖는 보험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이 보험료 산정의 기본원리가 됩니다.

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에 따른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면 확률적으로 특정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일정해져 통계적 예측이 가능한 것과 같이, 다수의 경제주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사고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나.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산정됩니다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할 때 보험료가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 수지 상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전체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수입보험료 총액이 지급보험금 총액과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요율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도성의 원칙)

보험요율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을 예측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예측의 방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마다 보험요율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과도성의 원칙에 따라 요율은 공정하고 타당해야 하며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됩니다.

나. 보험요율은 보험회사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보험요율 산정의 기술적 특성때문에 보험회사 간에 불건전한 과당 경쟁이 행해질 때에는 보험요율의 부당한 덤핑이 행해지기 쉽고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됩니다. 비록 보험사업이 공공성, 사회성이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의 보장 또한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은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이윤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위험의 크기에 맞는 공정한 차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성의 원칙)

보험요율은 단위 집단 내의 위험도에 따라 수지 상등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때 단위 집단 내의 개개인에 대한 요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위 집단 내의 보험계약자별 위험의 크기, 즉 사고 발생 빈도, 심도 등에 따라 위험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국내 손해보험 요율 현황

가. 국내 손해보험 요율 체계

1) 자사요율

원보험사가 자체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요율

2) 참조요율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제공한 과거 경험통계에 기반하여 산출한 요율이며 이를 원보험사에게 제공

3) 판단요율

원보험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판단한 요율

4) 협의요율

국내외 재보험사들이 과거 손해율 분석, 개별 위험 특성, 시장 담보력 등 재보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원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요율

나. 국내 기업성보험 요율제도 자유화 시행 (2016년 4월)

선진 시장 사례를 참조하여,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성 보험 자유화를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4월 이전에는 협의요율을 특정종목 및 금액 이상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으나, 자유화 시행 이후 전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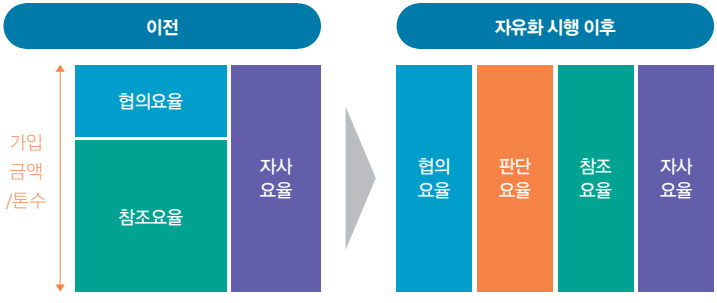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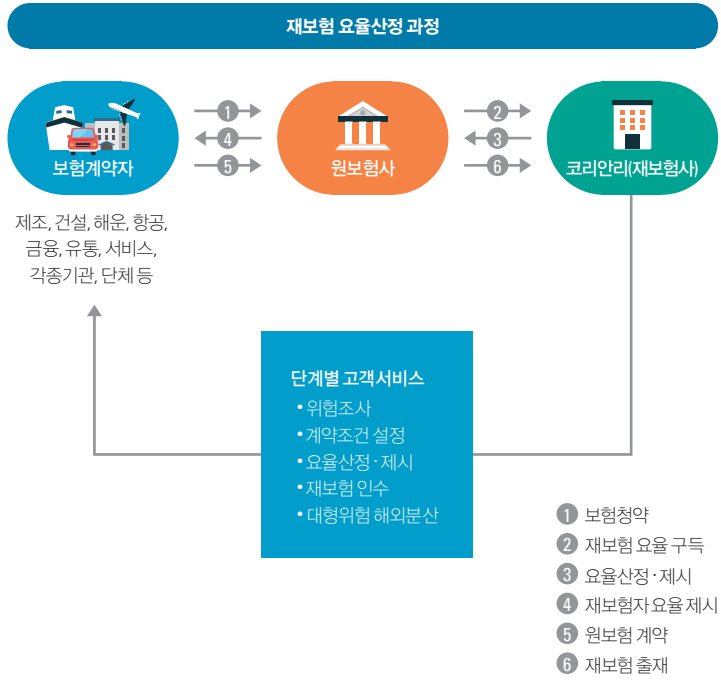
재보험 요율산정 과정
보험계약자
원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사)
제조, 건설, 해운, 항공,
금융, 유통, 서비스,
각종기관, 단체 등
단계별 고객서비스
• 위험조사
• 계약조건 설정
• 요율산정·제시
• 재보험 인수
• 대형위험 해외분산
1 보험청약
2 재보험 요율 구득
3 요율산정·제시
4 재보험자 요율 제시
5 원보험 계약
6 재보험 출재

보험 이해 관계자

1. 원보험사 (Direct Insurer, Primary Insurer)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원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고, 필요할 경우 자기가 부담하는 책임한도(보유)를 초과하는 부분을 재보험을 통해 출재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하는 주체가 됩니다.

2. 전업재보험사 (Professional Reinsurer)

재보험사는 재보험과 재보험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러한 재보험사 중에는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면허를 취득한 전업재보험사(Admitted Professional Reinsurer)가 있는 반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재보험사(Non-Admitted Professional Reinsurer)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Munich Re, 국내에는 Korean Re 등이 전업재보험사에 해당합니다.

원보험사도 재보험 영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보험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원보험사가 재보험을 수재할 경우에도 '재보험사'가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업재보험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재보험풀 (Reinsurance Pool)

위험도가 특히 높거나 보험가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독 재보험 처리가 곤란한 특수위험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재보험을 인수하는 집합적 재보험 방법입니다. 원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의 전액 또는 우선 보유 후의 잔액을 재보험풀에 전가하고 재보험풀 참여사들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재보험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재보험풀에 가입한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위험을 일정한 비율로 취득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보험조직을 활용하여 대규모 리스크의 인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풀과 원자력보험풀이 있습니다.

4. 중개사 (Broker)

중개사는 원보험중개사와 재보험중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원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재보험중개사는 출재사와 재보험사 사이에서 재보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사는 위험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서류의 작성 등 보험 관련 부수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료 및 보험금 송금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는 이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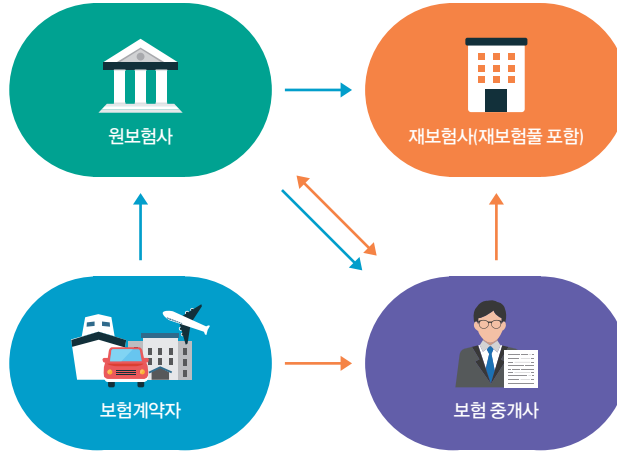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B

보험시장 현황

Ⅰ. 세계 원보험시장
Ⅱ. 세계 재보험시장
Ⅲ. 세계 주요 사고 현황
Ⅳ. 재보험시장의 경기 변동
Ⅴ. 한국 보험시장

I

세계 원보험시장

1. 수입보험료 규모

2019년 세계 보험시장 규모는 6조 3천억불로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조 9천억불,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조 4천억불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USD 십억, %)

순위	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점유율
1	미국	628	1,832	2,460	39.0
2	중국	329	288	617	10.0
3	일본	341	118	459	7.3
4	영국	264	102	366	5.8
5	프랑스	167	95	262	4.2
6	독일	102	142	244	3.9
7	한국	95	80	175	2.8
8	이탈리아	124	44	168	2.7
9	캐나다	53	80	133	2.1
10	대만	98	20	118	1.9

* 출처: Swiss Re Sigma

2. 주요국가 성장률

국가별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추이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3.6%	3.7%	4.8%	111.9%	4.1%
캐나다	4.1%	-1.9%	5.5%	10.7%	6.2%
일본	1.3%	10.7%	-2.1%	-3.4%	6.5%
호주	0.5%	64.9%	7.7%	1.6%	-2.0%
영국	1.3%	-9.9%	-1.8%	13.5%	-3.9%
독일	3.3%	2.7%	5.3%	1.1%	15.8%
프랑스	1.0%	5.1%	4.2%	8.4%	-0.8%
이탈리아	-2.9%	0.6%	2.8%	8.1%	-2.7%
스페인	3.0%	6.7%	6.2%	9.9%	-2.0%
선진시장*	2.5%	4.6%	4.2%	56.5%	2.8%
신흥시장	4.9%	6.6%	9.7%	8.2%	6.1%
전세계	3.0%	5.0%	5.4%	46.2%	3.4%

* 출처: Swiss Re Sigma

국가별 생명보험시장 성장률 추이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4.3%	0.9%	-1.9%	11.4%	3.2%
캐나다	3.5%	-0.8%	5.4%	5.0%	-1.6%
영국	17.6%	-8.8%	-3.0%	44.7%	-3.8%
일본	1.5%	-2.8%	-8.1%	6.6%	4.2%
호주	-7.4%	-13.6%	-14.7%	-3.1%	-0.7%
프랑스	1.3%	1.8%	0.4%	11.2%	-1.9%
독일	-2.7%	-1.7%	2.0%	2.0%	2.7%
이탈리아	4.0%	-4.5%	-4.4%	10.0%	-1.0%
스페인	3.4%	21.5%	-3.6%	-15.2%	12.0%
네덜란드	-16.9%	-9.4%	-3.2%	-3.0%	-4.6%
선진시장*	3.4%	-0.8%	-0.6%	11.7%	0.3%
신흥시장	13.2%	14.5%	17.3%	-2.7%	4.6%
전세계	5.0%	1.9%	2.9%	8.5%	1.2%

* 출처: Swiss Re Sigma
* 선진시장: 북미, 서유럽,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II

세계 재보험시장

1. 재보험시장 규모

2019년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원보험시장의 4.6% 수준인 2,912 억불로 추정됩니다.

구분	원보험	재보험*	비율
손해보험	3조 3,763억불	1,958억불	5.8%
생명보험	2조 9,163억불	954억불	3.3%
합계	6조 2,926억불	2,912억불	4.6%

*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상위 50개 재보험사 재보험료 합계.
* 출처: Swiss Re Sigma, A.M.Best

세계 재보험시장 점유율을 보면 상위 5개사가 48.0%, 상위 10개사가 68.9%로, 상위 사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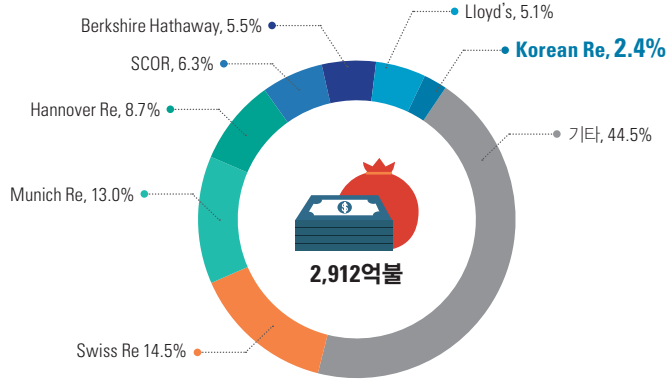

*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상위 50개 재보험사 수입보험료 기준

2. 재보험시장 현황

세계 10대 재보험사

(단위: USD 백만, %)

순위	사명	수재보험료	국가	전년도 순위
1	Swiss Re	42,228	Switzerland	1
2	Munich Re	37,864	Germany	2
3	Hannover Re	25,309	Germany	3
4	SCOR	18,302	France	4
5	Berkshire Hathaway	16,089	U.S	5
6	Lloyd's	14,978	U.K	6
7	Great West Lifeco	13,260	Canada	9
8	China Re	13,161	China	7
9	RGA	12,150	U.S	8
10	PartnerRe Ltd	7,285	Bermuda	11
11	**Korean Re**	**6,963**	**Korea**	**10**

* 출처: A.M.Best, 2019년도 수재보험료 기준

손해재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지역	2015	2016	2017(F)	2018(F)	2019(F)
선진시장**	4.5%	3.6%	1.8%	3.0%	3.1%
신흥시장	2.3%	-2.0%	5.6%	5.4%	5.7%
전세계	3.9%	2.0%	2.8%	3.4%	3.8%

* 출처: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8

생명재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지역	2015	2016	2017(F)	2018(F)	2019(F)
선진시장**	-0.4%	7.2%	-1.0%	-0.4%	-0.6%
북미	0.2%	7.0%	-2.4%	-2.4%	-2.2%
서유럽	1.5%	1.7%	1.0%	1.0%	0.6%
선진아시아	-6.1%	18.1%	2.3%	6.1%	4.6%
신흥시장	-43.9%	12.2%	15.7%	10.8%	10.1%
전세계	-9.3%	7.9%	1.1%	1.2%	1.2%

* 출처: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8

** 선진시장: 북미, 서유럽,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3. 국가별 재보험 시장 특성

국가별 재보험시장의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적 재보험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원인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거래 시에 재보험사의 규모 및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자국내 국적 대형재보험사가 없는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는 외국 재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험산업 경쟁력 저하, 계약자 보호 약화, 해외 재보험사의 영향 증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보험시장인 영국, 유럽, 미국 및 버뮤다 시장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영국 재보험시장

영국 시장은 'Company Market'과 'Lloyd's Mark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재보험시장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인수할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거대한 위험(Risk)을 인수하며 재보험 수요자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적 Tailor-made화된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사들은 세계 각지에 사무소 및 지점 등을 설치하여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출재사에게 요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영국에서는 1,300여개의 보험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그 중 900개 이상이 손해보험사입니다. 2020년말 현재 Lloyd's에서는 93개의 신디케이트와 335개의 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상위 10개 손해보험사가 자국에서 차지하는 수입보험료는 약 76% 입니다.

그러면, Lloyd's Market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oyd's Market
17세기 중엽 런던의 E. Lloyd라는 작은 커피숍에서 보험자와 고객이 만나기 시작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형성된 신디케이트(Syndicate)의 집합체로서 Lloyd's 자체는 하나의 보험회사라기보다는 시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 Lloyd's Market 구조

Lloyd's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회원은 신디케이트(Syndicate)를 통해서 보험을 인수하며, 실제로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신디케이트에 소속된 전문 언더라이터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디케이트를 관리하는 주체는 Managing Agent이며, 위험 인수를 위한 자본은 투자기관, 전문투자자, 보험회사 및 개인들의 투자를 통해 조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loyd's 중개사는 Lloyd's Market에 보험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언더라이터들이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가입자 및 전세계의 중개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Lloyd's 중개사를 거쳐 Lloyd's Market에 소개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인수하는 신디케이트는 원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되는 것입니다. Lloyd's Market의 구조는 보험 인수 결정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중개사가 보험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신디케이트에 소속된 언더라이터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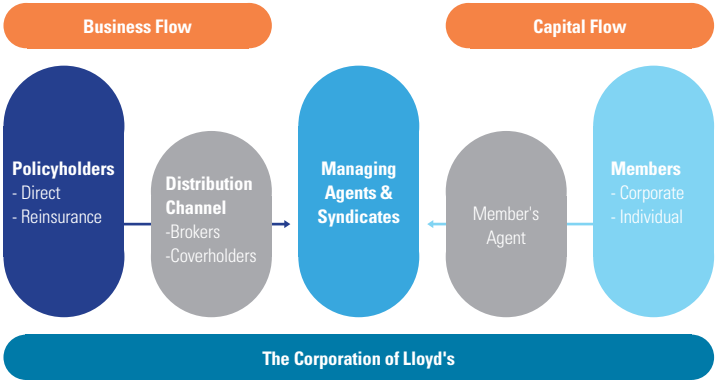

* 출처: Lloyd's

• Lloyd's Members

자본 제공자인 Lloyd's 회원들은 각자가 이익을 누리고, 손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신디케이트를 통해 보험을 인수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loyd's 회원은 Corporate Member(이하 단체회원)와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회원은 여러 개의 신디케이트에 자본을 제공하는 반면 단체회원은 한 개의 신디케이트만을 통해 보험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Syndicates

Lloyd's 회원은 신디케이트를 통해 보험을 인수하며, 신디케이트는 Managing Agent를 통해 운영됩니다. 시장에서 활동 중인 대부분의 신디케이트는 해상, 항공, 대재해, 전문인배상책임, 자동차 등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보험을 인수합니다. 신디케이트도 일반 보험회사들처럼 보험 인수를 위한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각 가입자의 위험에 특화된 보험증권을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 Managing Agent

자금을 제공하는 Lloyd's 회원을 대신하여 신디케이트에서 언더라이팅을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고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Managing Agent 입니다. Managing Agent는 신디케이트 운영 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어야 하며, 다른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Managing Agent는 여러 개의 신디케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9년말 현재 Aspen, Brit 등의 Managing Agent는 한 개의 신디케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AmTrust, Hiscox, QBE 등의 Managing Agent는 두 개 이상의 신디케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Lloyd's Market에는 총 53개의 Managing Agent와 102개의 신디케이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Lloyd's Broker

인증 받은 Lloyd's 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Lloyd's Market에서 보험을 중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한층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협상을 하기도 하며, 2019년말 기준으로

378개의 중개사가 Lloyd's Market에서 활동 중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특정 위험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Lloyd's는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중개사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있으며, 모든 중개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Lloyd's 중개사가 되기 위한 평가에서 Lloyd's Market에 대한 이해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Member's Agent

Member's Agent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된 회사이며, 개인회원과 그들의 신디케이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비스 및 행정 업무라 함은 회원들이 어떤 신디케이트에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회원과 Managing Agent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업무 등을 말합니다.

• Coverholder

Coverholder는 Managing Agent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해당 Managing Agent가 관리하는 신디케이트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관련 문서를 발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Approved coverholder와 Restricted coverholder로 구분되며, 전자는 Lloyd's로부터 coverholder로서의 활동을 승인 받은 회사를 말하며 후자는 Restricted coverholder 등록부에 포함될 자격을 갖춘 영국 회사를 일컫습니다. Restricted coverholder는 미리 정해진 요율 및 조건을 기준으로 특정 영역의 위험만을 인수할 수 있으며, Lloyd's로부터 인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Restricted coverholder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국 내에서 보험 중개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어야만 합니다.

• Lloyd's Agent

2021년 현재, 전세계에 약 300개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Lloyd's Agent는 전세계 보험시장조사 및 사고조사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그 하위에도 340개의 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2) Membership of Lloyd's

Lloyd's Market에서 보험 인수를 위한 담보력을 제공하는 주체는 Lloyd's 회원입니다. 현재 Lloyd's 회원은 법인, 개인, Scottish Limited Partnership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개인 이외의 회원을 단체회원이라 지칭합니다.)

Names라 불리는 개인회원은 고액자산가로서, 인수한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단체회원은 법인회원(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i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포함)과 Lloyd's에서 보험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Scottish Limited Partnership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인 및 개인은 유한책임회사인 단체회원을 소유할 수 있는데, "Namecos"는 한 개인이나, 여러 명이 집단을 이루어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인수하는 보험에 대한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설립된 합작회사인 Scottish Limited Partnerships(SLPs)는 또 다른 형태의 Lloyd's 단체회원입니다. 다른 관할구와는 달리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합작회사는 독립된 법인 격을 부여 받게 되므로 Lloyd's의 회원이 될 자격이 갖추어 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Namecos와 마찬가지로 SLPs 역시 유한책임을 기반으로 보험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들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시장은 1년 평균 10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신설되고 10개 정도가 영업을 중지하거나 파산합니다. Lloyd's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개인회원(Names) 제도의 오랜 전통을 깨고 1994년부터 유한책임의 법인회원(Corporate Members) 제도를 도입하여 Lloyd's 자체의 인수 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자구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디케이트가 지금은 102개로 증가하였고 신디케이트의 평균 담보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국 재보험시장은 여전히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선박, 항공보험 및 자연재해보험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 유럽 재보험시장

영국을 제외한 유럽 재보험시장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을 의미하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보험료 규모 세계 1~4위 재보험사가 이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업재보험사 중 제일 먼저 설립된 Kölnische Re(1846년 설립, 현재 Gen Re로 사명 변경)는 독일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SCOR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년 이상 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업재보험사들은 전문적으로 재보험만을 취급하며 재보험 중개사를 통하여 영업하기보다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재보험 수요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과 WTO 등에 의하여 기술과 자본력이 강한 유럽 재보험사들은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Swiss Re 통계에 따르면 상위 4대 유럽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1984년 22%에서 1994년에는 39%로, 2019년에는 약 43%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유럽 시장이 M&A를 통해 규모 증대와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06년 Swiss Re가 미국의 GE Re를 인수하여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최대 재보험사의 반열에 오른 한편, 프랑스의 SCOR 역시 Revios(2006년)와 Converium(2007년)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대형 재보험사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버뮤다의 Partner Re가 Paris Re를 인수하는 등 재보험업계에서는 M&A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미국 재보험시장

미국 보험시장은 세계 제1의 보험시장으로서 보험에 대한 감독은 각 주(州)별 보험감독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손해보험회사 수는 2,600여개(AXCO 기준)이며, 전업재보험사는 120여개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보험 수재보다는 출재 지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며, 대표적인 미국 전업재보험사인 Berkshire Hathaway를 비롯한 미국 재보험사들의 해외 수재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타 시장에 비하여 책임보험이 발달되어 있고, 법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점차 보상범위와 보상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관련 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roducts Liability),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등의 종목은 실적 악화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담보력이 소멸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상된 요율로 제한된 담보력을 제공하는 재보험사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며, 최근 들어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70~201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세계 10대 자연재해 사고 중 8개가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최대 보험손해액을 기록한 허리케인 Katrina(2005년)는 2위를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2011년, 373억달러)의 두배가 넘는 807억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2012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약 300억불의 보험손해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 발생 증가는 미국 보험회사들의 전체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야기했으며, 자연재해 재보험의 상당 부분이 재재보험으로 런던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출재되었기 때문에 세계 재보험시장의 손해율 또한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점차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재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요율을 인상하고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 버뮤다 재보험시장

버뮤다 보험시장은 'Tax Haven(면세)'지역으로, 종속보험회사(Captive Company) 포함 1,000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기피되고 있는 책임보험과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담보력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버뮤다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시장 중심지로서 쌓아온 버뮤다의 명성은 버뮤다에서 상당히 생소했던 제3자배상책임위험을 인수하는 종속보험 회사를 설립한 일부 투자자들로 인해 다소 퇴색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액 고액화 추세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실적이 악화되면서 Lloyd's와 미국 보험사들이 배상책임보험 인수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배상책임보험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자 담보력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ACE Ltd, XL Insurance Co. 등과 같은 초과액배상책임보험(Excess Liability) 인수 전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이례적인 대형 자연재해 빈발로 Lloyd's 신디케이트들 및 세계 유수 재보험사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재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사태가 초래되면서, 전세계 재보험시장의 담보력은 1987~1992년 사이에 무려 100억불이 감소되고 요율도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들과 투자기관들을 중심으로 버뮤다에 대재해위험 인수 전문 재보험사 설립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사고는 버뮤다 재보험시장의 지형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는데,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들이 9.11테러로 야기된 재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수익을 겨냥하여 버뮤다 재보험시장에 재보험사를 추가로 설립하거나 담보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III

세계 주요 사고 현황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으로 인한 보험가입물건 증대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손해액과 보험손해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대형사고를 분석해 보면 인재(人災)사고는 과거 손해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연재해 사고의 손해액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Katrina, 2017년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을 강타한 3개의 허리케인 Harvey, Maria, Irma,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2012년 허리케인 Sandy 등 2000년 이후 초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70년 이후 발생한 세계 10대 대형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10대 대형사고

(단위: USD 백만, 명)

순위	사고명	피해지역	발생일자	보험손해액**	사망자수
1	허리케인 Katrina	미국, 멕시코만 등	2005.08.25	80,699	1,836
2	동일본 대지진	일본	2011.03.11	37,344	18,451
3	허리케인 Sandy	미국, 카리브해 등	2012.10.24	30,141	237
4	허리케인 Harvey	미국, 카리브해 등	2017.08.17	30,000	91
5	허리케인 Andrew	미국, 바하마	1992.08.23	27,368	65
6	허리케인 Maria	캐리브해 등	2017.09.18	27,000	3,057
7	WTC 테러	미국	2001.09.11	25,456	2,982
8	Northridge 지진	미국	1994.01.17	24,773	61
9	허리케인 Irma	미국, 카리브해 등	2017.08.30	23,000	134
10	허리케인 Ike	미국, 카리브해 등	2008.09.06	22,577	193

* 출처: Swiss RE Sigma, 2019

** 2019년 기준 환산금액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IV

재보험시장의 경기 변동

재보험시장의 담보력 공급이 증가하지만 재보험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요율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는 보수적 언더라이팅으로 담보력 제공을 축소하게 되고, 이때 자연재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수요 증가로 인해 보험요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요율 상승에 따라 재보험 공급이 늘어나면서 다시 요율이 하락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때 담보력이 과잉 공급된 시장을 소프트마켓(Soft Market, 軟化市場)이라고 하며, 반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의 시장을 하드마켓(Hard Market, 硬化市場)이라고 합니다.

V

한국 보험시장

1. 한국 원보험시장 현황

가. 국내 원보험시장 규모

2019년도 기준 국내 보험시장 규모는 203조원(세계 7위)으로 세계 보험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인 보험침투도는 10.8%이며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는 3,366불로 세계 1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도별 보험시장 규모

(단위: 조원)

FY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2008	74	66.7%	37	33.3%	111
2009	77	63.6%	44	36.4%	121
2010	83	61.5%	52	38.5%	135
2011	88	59.1%	61	40.9%	149
2012	115	62.5%	69	37.5%	184
2013	77	58.8%	54	41.2%	131
2014	110	58.8%	77	41.2%	187
2015	117	59.4%	80	40.6%	197
2016	120	58.8%	84	41.2%	204
2017	114	56.4%	88	43.3%	202
2018	111	55.0%	91	45.0%	202
2019(E)	108	53.2%	95	46.8%	203
2020(F)	106	52.2%	97	47.8%	203

* 출처: 보험통계연감, 보험연구원 '201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회기 기준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30개사로 이 중 국내사는 13개사이고 외국사는 17개사이며, 생명보험회사는 24개사로 국내사 16개사와 외국사 8개사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나.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2019년도 기준 수입보험료는 95조원으로 세계 7위이며 세계 손해보험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험시장 규모

(단위: 조원, %)

종목		2017	2018	2019(E)	2020(F)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49.1	50.6	52.7	54.5
	성장률	2.8	3.0	4.2	3.4
연금부문	보험료	13.5	14.3	14.8	15.1
	성장률	14.1	5.9	3.5	2.0
자동차보험	보험료	16.9	16.7	17.1	17.3
	성장률	2.8	-0.8	2.4	0.9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8.9	9.5	9.8	10.1
	성장률	4.8	6.3	3.8	2.8
합계	보험료	88.3	91.1	94.5	97.0
	성장률	4.5	3.1	3.8	2.6

* 출처: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다. 생명보험 종목별 보험료

2019년도 기준 수입보험료는 108조원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생명보험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험시장 규모

(단위: 조원, %)

종목		2017	2018	2019(E)	2020(F)
보장성보험	보험료	41.8	42.8	44.3	45.4
	성장률	3.6	2.5	3.6	2.4
저축성보험	보험료	56.5	50.4	45.4	41.6
	성장률	-8.9	-10.8	-10.0	-8.4
퇴직연금	보험료	14.9	16.9	17.6	17.9
	성장률	-10.9	13.2	4.1	1.9
기타	보험료	0.8	0.8	0.8	0.8
	성장률	0.4	-0.4	1.1	0.4
합계	보험료	114.0	110.8	108.1	105.7
	성장률	-4.9	-2.7	-2.5	-2.2

* 출처: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2. 한국 재보험시장 현황

가. 국내 재보험시장 규모

2018년 국내 재보험시장 규모는 원보험시장의 5.8%인 11.7조원입니다.

국내 손해/생명보험시장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원보험	재보험	비중
손해보험	91.1	9.7	10.6
생명보험	110.8	2.0	1.8
합계	201.9	11.7	5.8

1997년 재보험 자유화 이후 제도, 법규상 거래 장벽이 없어졌으며 자유경쟁 체계가 정착되어 국내 보험업 허가를 받은 외국 회사들의 국내 지점뿐만 아니라 허가 받지 않은 해외 재보험사도 지점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재보험시장은 손해보험의 일반보험 종목 위주의 출재시장으로 원보험사가 직접 또는 중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외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재보험사는 총 9개사로 국내 전업재보험사는 코리안리 1개사이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재보험사는 8개사입니다.

나.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 (2018회기)

국내 손해보험 재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억원, %)

구분	규모	점유율
코리안리	76,758	79.2
Swiss Re	6,548	6.8
Munich Re	3,982	4.1
SCOR	3,874	4.0
RGA	3,504	3.6
Gen Re	815	0.8
기타	1,453	1.5
합계	96,934	100

상기 표에서 코리안리 시장 점유율이 79.2%이나 이는 전체 재보험료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재보험 수요가 거의 없는 장기, 자동차 보험을 차감한 일반보험에서 코리안리의 실질적 시장 점유율은 50% 선입니다.

세계 각국의 재보험업계에서 특정 회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국내 재보험사가 국가별 리스크 특수성, 시장 우호적 보험사고 처리, 담보력 지속 제공 등 영업상 장점을 활용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3. 한국 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역할

독일에 Munich Re, 스위스에 Swiss Re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국적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있습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로서 반세기 동안 전세계 600여개사와의 재보험거래를 통해 재보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와 A.M.Best로부터 A 신용등급을 획득함으로써 높은 담보력 수준과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재보험 전문회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리안리는 국내 원보험사들에게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요율 및 맞춤형(Tailor-made)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재보험 거래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대형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의 전가로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해외 재보험사보다 신속하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 계약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재보험 완전자유화 이후에도 코리안리가 높은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형위험에 대한 인수 능력 제공

코리안리는 국적 재보험사로서, 태풍 등 자연재해와 대형위험에 대한 위험도 조사, 요율 산정 및 재보험 인수로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 증대와 대형사고 발생 시 실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안리는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적 상호 이익을 통한 원보험사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원보험사의 재무구조 개선

원보험사는 재보험 출재에 따른 위험전가 효과, 즉 출재분에 대한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등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을 코리안리에게 이전함으로써 그만큼 부채가 감소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원보험사는 재보험 출재를 통해 적정 지불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원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재보험 출재는 지불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신상품에 대한 담보력 및 전문성 제공으로 신성장 동력 개발 지원

원보험사가 신상품을 도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통계의 미비로 예상 손해율을 초과하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또한 상품, 제도 및 법률 환경 등의 차이로 해외재보험 담보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코리안리는 국내 신상품에 대한 담보력과 전문성 제공을 통해 원보험사의 신성장 동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과보험료**

수입보험료 중 아직 보험회사의 책임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급준비금**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사고(Outstanding Loss)와 이미 발생하였으나 재보험사가 아직 통보 받지 못한 보험사고(IBNR)에 대한 적립금.

라. 재보험 지식, 기술 및 서비스 제공

코리안리는 상품개발, 요율산정, 언더라이팅, 위험관리, 손해사정 등 전문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다양한 해외 인수 경험을 통해 원보험사에 필요한 해외보험시장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해외보험시장 공동조사, 원보험사 직원의 언더라이팅, 재보험 관련 교육 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신속한 재보험금 지급

해외 재보험 거래에는 국내, 해외 간 상품, 금융시장 제도, 관행 등의 차이에 의해 분쟁 및 재보험금 회수 불능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청산에 있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 국내보험시장 이해 대변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 중심의 재보험 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여 원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해외 재보험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형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세계 재보험시장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도 코리안리는 국내 원보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코리안리는 국내 재보험 제도 정착 및 역량 집중화를 통해 외화 유출을 방지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사고 직후 전 세계 재보험시장의 하드마켓 상황에서도 코리안리는 국내 원보험사에게 합리적인 요율과 충분한 담보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보험시장은 코리안리와 국내 원보험사의 동반자적인 재보험 거래 토대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C

재보험 법규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재보험사 Listing 제도

1. 개요

재보험사 Listing 제도는「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거래재보험사 적격성 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시행령상 출재사는 거래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투자적격 여부 및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출재 건별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출재사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재보험사로 출재한 경우 재보험 자산을 감액해야 합니다.

2. 재보험사 Listing 기준

가.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의해 책임준비금적립 면제(재보험 자산 계상)가 가능한 재보험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포함)이 투자적격일 것.

위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개발원 List 등록이 가능합니다. Listing은 법인(본사)을 기준으로 하며 지점(Branch)의 경우 본사의 신용등급 등 재무건전성 평가를 인정합니다.

다만, 본사 소재국 이외의 해외 지점의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Listing해야 하며 자회사는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모회사의 신용등급 등 재무건전성 평가 불인정)

나. 신용평가 투자적격 기준

•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은 보험업법시행령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A.M. Best, S&P, Fitch, Moody's 등 4개 기관과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금융감독원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등 3개 기관입니다.

• 인정되는 투자적격 신용등급

각 신용평가기관별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s)등급이 투자적격 신용등급일 경우 인정됩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 기준 및 투자적격 신용등급

구분	보험금지급능력평가	투자적격 신용등급
A.M.Best	Financial Strength Rating	A++, A+, A, A-, B++, B+
S&P	Financial Strength Rating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Fitch	Insurer Financial Strength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Moody's	Long-Term Insurance Financial Strength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한국기업평가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AAA, AA+, AA, AA-, A+, A, A-
한국신용평가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AAA, AA+, AA, AA-, A+, A, A-
NICE신용평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A, AA+, AA, AA-, A+, A, A-

• 기타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 인정됩니다.

Lloyd's Syndicate는 Lloyd's of London 1개사로 Listing하며 Lloyd's of London(Lloyd's)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Lloyd's Syndicate는 개별 Syndicate별로 Listing하지 않으며, Cover Holder, Underwriting Agency 등 Intermediary는 Listing 대상이 아닙니다.

다.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충족 인정기준으로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한 재보험사로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발행한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증빙서류
2) 국내외 감독기관의 공시자료를 통한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확인
3) 외부 회계법인이 국내외 감독기관에 제출한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증빙서류
4)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기술된 경우)
5)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되고, 지급여력기준 충족을 명시하는 Annual Report
6)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 명의로 발행된 재무건전성 충족 증빙서류*

라. 재보험풀 (Reinsurance Pool)

재보험풀의 모든 참여사가 동 제도에서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동시에,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원자력풀은 참여사간 연대보증책임이 존재할 경우, 동 제도에서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한 동시에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지분이 전체 풀 지분의 50% 이상이라면 Listing을 할 수 있습니다.

*** 동 서류상에 기재된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사실에 대한 세부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2가지 근거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해당 소재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
-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 명의로 소재국 감독기관에 제출한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보고자료, 또는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국영(國營) 재보험풀은 동 제도에서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 투자적격 신용등급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기준(Rating Type) 및 투자적격 신용등급

구분	국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투자적격 신용등급
S&P	Issuer Credit Rating (Foreign Long Term)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Fitch	Long Term Issuer Default Rating (FC(Foreign Currency))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Moody's	LT(Long Term) Issuer Rating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재보험풀의 Listing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날짜로 참여사 지분 내역이 명시된 재보험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보험사 Listing 업무 절차

가. 신용평가 투자적격 여부 확인

정기 Update는 보험개발원에서 월별로 신용등급 확인 후 List 정보를 변경하며, 수시 Update는 보험개발원의 수시 확인 또는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진행됩니다. 재보험사 List 상 재보험사의 각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중 1개 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하락하거나 철회된 경우 List에서 삭제됩니다.

나.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정기 Update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 기간)

증빙서류의 인정 기간은 증빙서류의 발급/확보 기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등록일로부터 1년간 인정
2) 상기 인정 기간 중 거래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변동할 경우, 신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 상기 인정 기간 적용이 불합리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증빙서류의 인정 기간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인정 기간 만료일 경과 시 List에서 삭제

이에 따라, 해당 재보험사의 List 등록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인정 기간 종료 전에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시 Update

보험회사는 Listing 재보험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험개발원에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개발원은 동 재보험사를 List에서 삭제합니다.

다. 재보험풀

• 정기 Update (재보험풀 참여사 지분 증빙서류 인정 기간 등)

재보험풀 참여사 지분 인정 기간은 참여사 지분 증빙서류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인정 기간 설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보험풀의 List 등록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인정 기간 종료 전에 재보험풀 참여사 지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풀로서 참여사간에 연대보증책임 존재에 따른 Listing 기준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 계약의 유효기한을 넘지 못합니다.

• 수시 Update

재보험풀의 참여사 지분 인정 기간 만료 시 또는 참여사의 신용등급 하락,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 기간 만료 등으로 재보험풀의 Listing 기준 미충족 시 재보험사 List에서 제외됩니다.

4. 재보험사 List 조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INSIS(보험통계포털서비스)/재보험사 List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D

대체위험전가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Ⅰ. ART의 개요
Ⅱ. 대체위험전가
Ⅲ. 대체위험재무관리

I

ART의 개요

ART는 보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보험 상품 이외의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종속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y)의 설립과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의 위험 전가 등이 포함됩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와 대형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전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전통적인 재보험시장 이외에 새로운 위험전가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재보험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대체위험전가 상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ART는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설계 가능
- 계약이 다년간으로 제공됨
- 다양한 종목에 대해 동시에 담보 제공 가능
-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다양한 담보조건 설정 가능

198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누적손해 급증과 거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헤징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보편화되었고 1990년대 다양한 리스크 금융업 상품이 증가하면서 ART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규제 완화로 인해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 Linked Security)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 관리 기법이 생겨났습니다.

ART는 좁은 의미의 대체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 뿐만 아니라 대체위험재무관리(Alternative Risk Financing) 수단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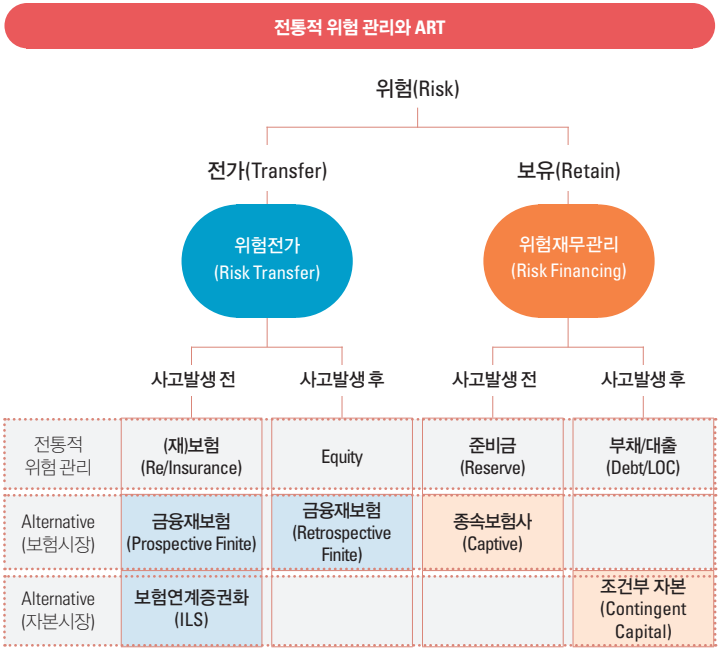

대체위험전가는 위험을 실제 외부로 전가하는 방법이며, 대체위험재무관리는 보험 및 재보험 이외의 기법을 사용하여 보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보유 위험을 재무적 수단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II

대체위험전가

1. 금융재보험 (Finite Reinsurance)

가. 금융재보험의 개요

금융재보험은 다년간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대신에 언더라이팅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보험사와 출재사가 공유하는 형식의 재보험 방식입니다.

단일 출재사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방식이므로 동일한 보상한도액을 갖는 전통적인 재보험에 비하여 재보험료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재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재보험사로부터 담보력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분배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재보험은 위험재무관리(Risk Financing)와 위험전가(Risk Transfer)가 융합된 형태입니다.

일반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의 차이

구 분	일반재보험	금융재보험
이자율 위험(재보험자)	없음	있음
보험금 조기지급위험(재보험자)	없음	있음
기발생손해 보험금 지급	없음	있음
이익의 환급조항	없음	있음
계약기간	1년	3년 이상
이익의 근원	계약인수(Underwriting)	관리비용(Fee)
채권위험(Credit Risk)	없음	있음

금융재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

구 분	내 용
언더라이팅 위험 (Underwriting Risk)	지급해야할 재보험금이 재보험료와 투자수익의 합계를 초과할 위험
타이밍 위험 (Timing Risk)	손해액의 지급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도래할 위험
신용 위험 (Credit Risk)	출재사가 약정한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
투자 위험 (Investment Risk)	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투자수익이 재보험 가격산정시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위험

나. 금융재보험의 종류

금융재보험의 종류는 크게 분류하여 장래형 담보(Prospective Cover)와 소급형 담보(Retrospective Cover)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보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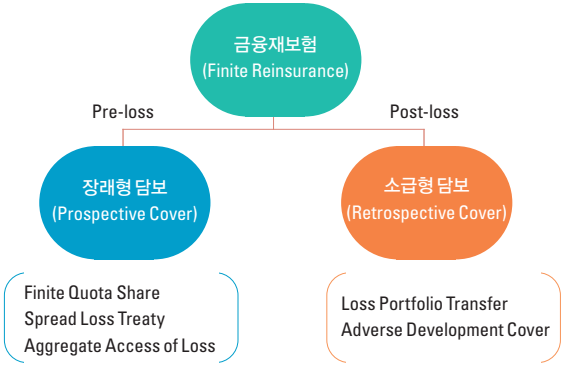

1) 장래형 담보(Prospective Cover)

재보험계약 체결시 아직 재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Finite Quota Share

재보험영업손익의 분담 및 재보험사의 책임액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 Quota Share 재보험특약으로 재보험사는 출재사와 보험료 및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고 그 대가로 출재사에 출재수수료를 지급합니다.

② Spread Loss Treaty(SLT)

출재사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상품으로, 최초 재보험료를 납입하고 다년 간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년 출재사의 보험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보험사가 약정된 한도 내에서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출재사도 추가적으로 재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③ Aggregate Excess of Loss (AXL)

계약기간 중 출재사의 보유 누적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재보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소급형 담보 (Retrospective Cover)

출재사의 보상책임 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통보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재사의 지급준비금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Loss Portfolio Transfer(LPT)

출재사가 잔존책임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출재사는 재보험사에게 지급준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Net Present Value, NPV)에 재보험사의 경비, 이윤, 언더라이팅 및 기타 위험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합하여 재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② Adverse Development Cover(ADC)

출재사가 기존 계약에 대해 현재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 또는 약정된 보유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출재사의 IBNR(미보고 발생손해액)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보험연계증권 (Insurance Linked Security)

가. 보험연계증권의 개요

보험위험을 증권화하거나,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하여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위험을 기존 보험시장이 아닌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전가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연계증권으로는 Cat Bond, Sidecar 등이 있습니다.

나. 보험연계증권의 종류

1) 대재해 증권(Cat Bond)

Cat Bond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또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연계채권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일시에 대량 조달하여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상품을 통한 대재해 담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입니다.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Cat Bond를 구입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재해는 환율, 물가 등과 같은 자본시장의 투자위험과 상관관계가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전략적인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Cat Bond의 주요 담보위험은 손해보험 상품의 자연재해(미국, 유럽, 일본의 지진과 폭풍 등의 위험 등), 배상책임, 비용손실과 생명보험 상품의 사망률 급증 또는 장수위험(Longevity Risk : 보험사의 예상보다 오래 생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at Bond는 대재해(Catastrophe)라는 특정 사고 발생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연계채권(Event-linked Bond)의 한 종류로 보통 발생확률 1% 이하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초과액재보험(Excess of Loss)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채권발행을 위한 고정 비용을 장기간 분산시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도덕적 해이와 지급 불능의 위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동 채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된 가격으로 다년 계약 가능

② 전통 재보험시장의 Hard Market시 추가 담보력 확보

③ 투자자의 Cat Bond를 통한 수익률

④ 발행되는 채권 안전도에 관한 신용평가를 통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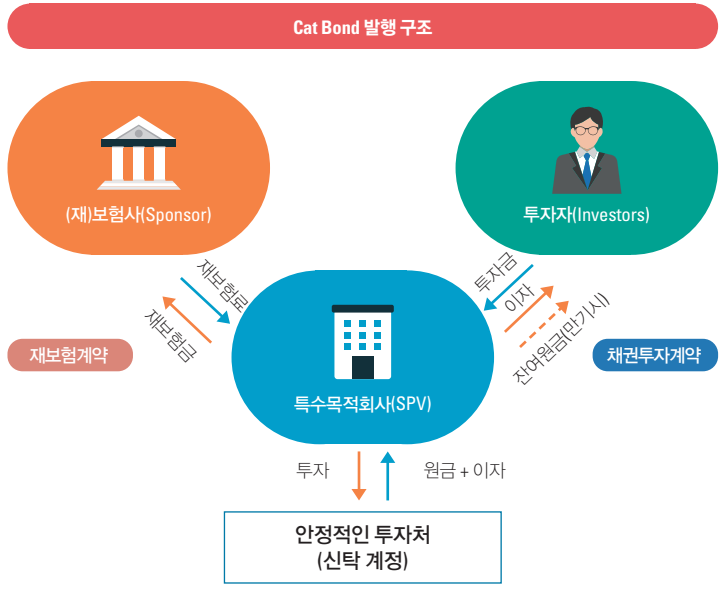

2) Sidecar

Sidecar는 Cat Bond와 더불어 보험연계증권의 한 형태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구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으로부터 자본을 제공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통적 재보험과 유사하나, 최소한의 서류작업과 관리비용을 들여 설립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Quota Share 비례재보험 형태로 운영되며, Sidecar를 통한 자금조달은 보통 Hard Market이 시작될 때 약정하여 Soft Market 직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보험 Sidecar를 통한 거래는 2001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이 크게 발생한 2005년 말에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Sidecar는

특히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고 이후 활성화 되어 약 70억불 이상의 단기 자본이 Sidecar 형태로 재보험 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

Sidecar는 주로 스폰서가 체결한, 제한된 범위의 단기 보험계약들(보험기간이 1~2년 정도 되는 대자연재해 등 초거대위험 관련)에 대하여 대재해로 인해 발생된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Sidecar의 담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장기 보험계약들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Sidecar를 통한 거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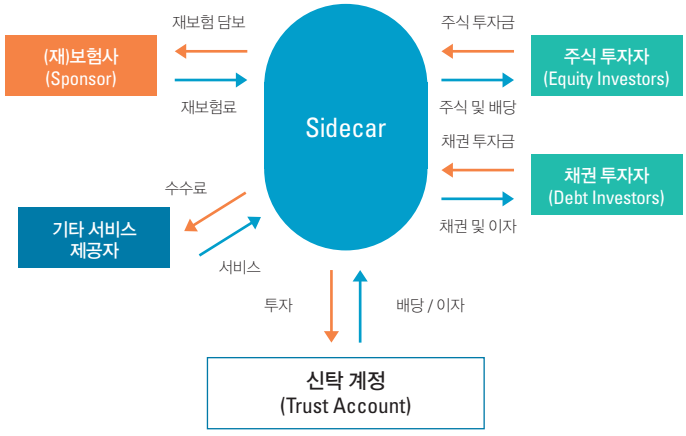

3) Industry Loss Warranty (ILW)

ILW(산업손실보증)는 어떤 산업에서 명기된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불수단이 되는 재보험 또는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담보가 되는 것은 전형적으로 적절한 한도를 충족시키는 지표에 도달하는가 여부이며 원보험사가 보유한 손해액과는 무관합니다.

ILW는 통상 1년 단위 계약으로 대재해사고 기간 중 또는 후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보험회사나 헤지펀드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III

대체위험재무관리

1. 대체위험 재무관리의 개요

대체위험재무관리는 기존 보험 및 재보험 이외의 기법을 사용하여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시장에서는 종속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y)가 위험이 기업집단 내에 보유된다는 측면에서 대체위험재무관리로 구분될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는 재무적 자본조달 수단으로 조건부 자본이 해당됩니다.

2. 대체위험 재무관리의 종류

가. 종속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y)

1) 개 요

종속보험사는 주로 모기업(집단)의 보험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종속보험사 설립의 주된 목적은 전체적인 보험위험에 대한 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그밖에 절세효과 등의 이유로 인해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속보험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량 위험의 보유 증대로 보험 및 투자영업이익 유출 최소화
- 모기업(집단) 보험 프로그램의 자기부담금 조정
- 기존 보험 프로그램의 대체 또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 기존 보험 시장에서 담보받기 어려운 위험의 전가

전통적으로 종속보험사 설립은 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유럽계 회사들도 영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종속보험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호주 및 일부 남미 회사들도 종속보험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종속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aptive 시장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버뮤다, 케이만 제도, 미국 버몬트州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기업성 보험시장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위험

주요 담보 대상 위험 및 관련 보험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보험사의 주요 담보 대상 위험 및 관련 보험종목

담보 대상 위험	관련 보험종목
재물손해/이익상실	재물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	근재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등

나.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

1) 개 요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은 손해 발생 후,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조건부 자본은 여타 자본시장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보험시장을 자본시장과 연계시킵니다.

조건부 자본은 위험전가 및 자본거래의 속성을 가진 보험연계증권(ILS)과 달리 보험의 특성이 없으며, 자본조달과 증권거래 목적으로만 고안되었기 때문에 발행자는 관련 규제, 세금, 자본 분류 방법 등 여러 이슈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적 위험 관리를 고려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조건부 자본은 사고 이후 자본조달이 용이한 대체위험재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자본은 크게 조건부 부채와 조건부 자기자본으로 구분하는데, 조건부 부채는 특정 촉발조건 발생 시에 조달 가능한 부채를 말하며, 조건부

자기자본은 특정 촉발조건 발생 시에 조달 가능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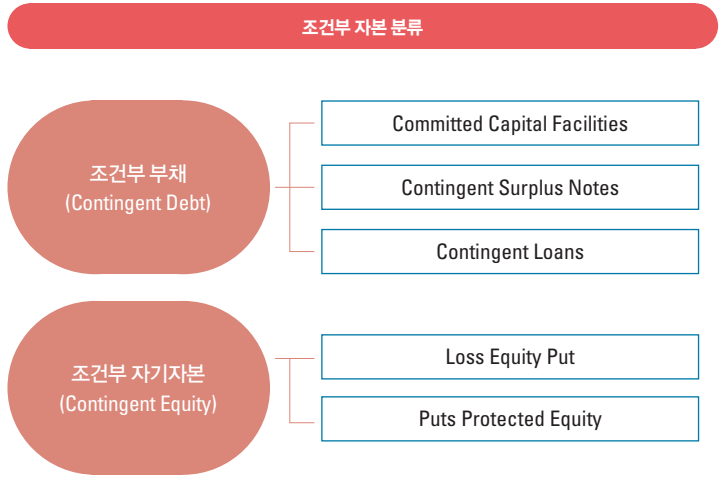

2) 주요 특징 및 활용

조건부 자본은 전통적인 보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자본은 저빈도-고심도의 사고를 대비하는 목적에 더욱 적합하며, 다른 위험전가 금융기법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통상적 위험 수준까지는 보험을 활용하고 그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조건부 자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상품으로 관리 불가능한 위험 (일반보험계약에서 면책인 대재해 위험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신용 위험 등)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재)보험사가 대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조건부 자본으로 사전에 자금을 확보해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건부 자본은 보험연계증권이나 XOL 계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E

문답으로 보는 재보험

문답으로 보는 재보험

1. 우리나라는 왜 자국 대형 재보험사를 보유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전업재보험사의 기능은 위험의 분산 및 평준화를 통하여 원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및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위험에 대한 적정한 담보력 제공 및 우량 위험에 대한 선별적인 보유 극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 규모는 경제 성장에 따라 고도화·거대화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적정하게 담보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담보력 확충 및 규모의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우량 위험 보유 극대화 측면에서는 자국 내 위험의 고유한 특성에 정통하고 장기간 축적된 경험통계를 보유한 자국 재보험사가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의 분산 및 평준화라는 전업재보험사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다수의 중소형 재보험사의 신설과 난립이 아닌, 국내 위험에 정통한 자국 전업재보험사가 규모 면에서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와 대등하게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Global Player가 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2. 한 국가에 재보험사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하나의 국가에 다수의 재보험사가 설립될 경우, 상호 경쟁 및 시장 교란을 유발하여 과다경쟁으로 인한 전체 국내보험시장의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설 재보험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은 소수의 기업성 대형물건으로 한정되어 한 건의 대형사고로 적자 또는 자본잠식 상태에까지도 이를 수 있으며, 인건비 등 초기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일정 규모의 초기 수재물량 확보 실패 시 보험영업손익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위험 물건을 다시 인수할 경우 결국 유동성 부족 및 자본잠식 가능성으로 경영상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일본, 인도 등)에서 자국 보험시장 부실화 및 외국 재보험사로의 시장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1국 1국영재보험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보험 회사 수: 1
사명: Toa Re

대만
재보험 회사 수: 1
사명: Central Reinsurance Corporation

인도
재보험 회사 수: 1
사명: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3. 재보험사들에게 신용등급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신용등급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국가신인도 등의 평가요소를 가지고 신용평가기관이 신용을 평가하여 부여한 등급으로, 투자 및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보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 법규, 관습, 언어가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로서,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은 거래규모와 보험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높은 신용등급 획득 시 국내 영업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에서도 양질의 재보험계약 인수로 안정적인 해외 수재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출재사들이 재보험사들에 대해 더 높은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안정성, 보험금지급능력 및 기타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모든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심사하는 신용등급은 재보험사 선택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와 A.M. Best로부터 A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담보력과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재보험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4. 보험회사 · 계약자들에게 재보험사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최근 국내 원보험사들이 부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로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어 2010년 5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 유도를 통한 재보험 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보험사 List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거래 가능한 재보험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부적격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경우 출재사의 재보험 자산을 감액해야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적격 재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 하락과 재보험사와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신용등급뿐만 아니라, 거래의 연속성, 청산 태도 및 대외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보험사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국내 재보험사와 거래 시 장점으로는 동일한 언어 사용과 재보험 관례로 인해 재보험 거래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불보험금의 지급이 용이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항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재보험 거래에 따른 신용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 및 원보험사들이 코리안리를 재보험사로 이용할 때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원보험사가 국내외 재보험시장에서 풍부한 재보험 경험과 우량 신용 등급을 보유한 코리안리를 재보험 파트너로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형 계약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보험조건 및 경쟁력 있는 요율 제시, 재보험 담보력 적기 제공으로 대형위험 전가에 유리합니다.

둘째, 하드마켓 시 국제협상력 강화로 재보험 담보 구득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고, 코리안리 중심의 재보험 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원보험사 개별 출재 시보다 유리한 조건 제시가 가능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신속한 재보험금 청산으로 재보험금 미수금이 감소하게 되어 출재사의 운용자산 증대와 투자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리안리는 전세계 재보험 담보 축소 및 요율 상승 시 국내 보험회사 및 보험시장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코리안리는 독점기업인가요?

코리안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되어 약 반세기 동안 재보험 영업을 해왔습니다. 코리안리는 설립 이후 약 30여년 동안 원보험사의 코리안리에 대한 '의무출재규정'에 따라 국내 재보험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동 규정이 폐지되면서 국내 재보험시장 자유화로 해외 재보험사들의 진입 및 영업에 제약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이 되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전세계 재보험사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리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담보력 제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해외 대형 재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Part. F

주요 재보험 용어 및 Wording

Ⅰ. 주요 재보험 용어
Ⅱ. 주요 재보험 Wording

I

주요 재보험 용어

A

Accounting year (사업연도)

회사의 영업실적을 집계하기 위한 회계상 기간.

B

Bordereaux (Bx., 보다르)

일정기간 동안 출재사에 의하여 출재되는 위험들에 관한 일람표로서 보험금액, 위험의 소재지, 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 한편, 보다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Non-Bx. System이라고 함.

Brokerage (중개수수료)

원보험 또는 재보험 처리나 다른 서비스의 대가로 중개사에게 지급되는 금액.

Burning cost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Excess of loss cover)에서 일정기간 내의 총보유보험료수입(Gross net retained premium income, GNRPI)에 대한 해당기간 중의 발생손해액(Incurred losses, 지급보험금과 미지급보험금적립액의 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함.

C

Capital market (자본시장)

기업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

Captive company

모회사의 소유 하에 있으면서 그 회사의 보험을 인수하는 종속회사.

Cash loss / Cash call (즉시불보험금)

고액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특약 상의 대차청산기간에 관계 없이 즉시 지급하여야 할 재보험금.

Catastrophe reinsurance (대재해재보험)

막대한 손실에 대비한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의 일종으로 일련의 대재해로 인한 누적손실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유를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재보험계약으로써 Catastrophe cover라고도 함.

Ceding company (출재사)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출재하는 보험회사를 말함.

Claims cooperation clause (손해 처리 사전협의조항)

보험금 처리시에 출재사가 재보험사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조항.

Clean cut system

재보험특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재보험사 부담의 미경과보험료 및 미지급보험금을 출재사가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하여 재보험사의 책임이 완전히 종결되는 제도.

Commutation (합의청산)

합의된 금액을 청산함으로써 미지급보험금 등 잔존책임을 종료함.

Contingency reserve (비상위험준비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Cover note (재보험인수증)

중개사 또는 재보험사가 발행하는 증서로서 담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줌.

D

Deductible (자기부담금, 공제액)

(1) 원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에서 출재사가 보유하는 손해액(Underlying retention).

Deposit premium (예납보험료)

보험계약 중에는 포괄계약(Open cover)이나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과 같이 계약 체결 시에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잠정적으로 징수하는 보험료가 예납보험료 또는 잠정보험료임. 실제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 시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산하여 확정함.

E

Earned premium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 미경과보험료 증(감).

Estimated maximum loss, EML (최대추정손실액)

한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최대추정손해액.

Excess aggregate reinsurance

일정기간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손실의 총 합계액을 담보하는 재보험.

Excess of loss reinsurance (초과손해액재보험)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재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재보험.

Exclusion (면책 위험)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거나 보험기술 측면에서 담보가 곤란한 전쟁위험, 원자력위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ee)위험 등은 일반적으로 면책.

Ex-gratia payment (특혜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이 분명히 없는 경우라도 계약자에 대한 특혜로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F

Facultative reinsurance (임의재보험)

매 계약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출재하는 재보험 방식.

Facultative obligatory treaty (의무적 임의재보험)

출재사는 보험계약의 출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재보험사는 출재된 계약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특약 (F/O Cover).

First loss

부보된 손실이 1차로 적용되는 부분. 즉, 원보험 또는 재보험의 공제액.

First surplus treaty (1차 초과액재보험특약)

출재사의 순보유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초로 출재되는 비례재보험특약.

Follow the fortunes (공동운명조항)

특약재보험사는 특약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출재사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함. 이 조항은 최대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특약재보험 거래의 근간을 이룸.

G

Gross net retained premium income (GNRPI)

원보험료에서 모든 종류의 비례재보험 출재분을 제외한 보험료로서 비비례재보험특약의 기준이 되는 예상 보유보험료.

I

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미보고발생손해액)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업무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아직 통보 받지 못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과거 실적 등 경험을 토대로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

Incurred loss (발생손해액)

순보험금 + 지급준비금 증(감).

ILS (Insurance linked security, 보험연계증권)

재보험회사들이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만든 파생금융상품.

L

Leader (리딩 재보험사)

재보험담보의 조건을 협상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보험사로서 다른 재보험사들이 그의 능력이나 기술, 판단 등을 존중하고 따르는 재보험사를 말함.

Line (라인)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treaty)에 있어 출재사의 매 위험에 대한 보유액. 통상 위험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Long-tail business

보험금을 통보하고 청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을 말함.

Loss portfolio

비례재보험특약의 만기, 해약 또는 갱신 시점에 재보험사가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회수하는 해당 재보험금 전체를 말함. 통상 차기에 참여하는 재보험사에게 보험료(Premium portfolio)와 함께 이전.

Loss reserve (보험금 유보금)

재보험 거래에 있어서 기 발생 사고에 대한 재보험사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보험 지분 해당 금액을 출재사가 일정기간(통상 1년) 유보하는 것.

N

Natural expiry
특약재보험상 정상적인 계약만료일자.

Net commission (순수수료)
지급수수료 – 수입수수료.

Non-proportional reinsurance (비비례재보험)
출재사와 재보험사 간에 책임액, 보험료, 보험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지 않고, 일정 손해액(보험금)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보험 거래 방식.

O

Obligatory treaty (의무 출재 특약)
출재사가 의무적으로 출재하고 재보험사도 의무적으로 수재하는 형태의 특약.

Outstanding claim reserves (미지급보험금 유보금)
미지급보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사가 출재사에 유보시킨 준비금.

Outstanding loss (미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보서는 접수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Overriding commission (오버라이딩 수수료)
재보험사가 재재보험 출재 시 사업비의 일부를 보전 받기 위하여 재보험 수수료에 일정비율을 덧붙여 재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추가수수료.

P

Per event cover (매 사고당 담보)

동일한 원인으로 일정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물건에서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재보험사가 부담.

Per risk cover (매 위험당 담보)

각각의 보험물건(Per risk)별로 일정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동 한도 이내의 손해액은 출재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사가 부담.

Portfolio (포트폴리오)

(1)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총체.

(2)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출재되는 재보험 대상 전체 계약

(3) 비례재보험특약(Proportional reinsurance treaty)이 만기, 해약 또는 갱신되는 시점에서의 미경과보험료 및 미지급보험금의 재보험 출재분을 출재사의 재량에 따라서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하여 차기 재보험사에게 인계할 때 동 인계분. 세부적으로는 전자를 Premium portfolio, 후자를 Loss portfolio라고 함.

Premium portfolio

비례재보험특약의 만기, 해약 또는 갱신 시점에 재보험사가 미경과 기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회수하는 해당 미경과보험료 전체를 말함. 통상 차기에 참여하는 재보험사에게 Loss portfolio와 함께 이전.

Premium reserve (보험료 유보금)

일정시점에 유효한 보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보험사가 출재사에 유보시킨 금액.

Profit commission (이익수수료)

통상 비례재보험특약에서 재보험사가 이익을 시현할 경우 이를 출재사가 원보험계약 인수 시 Underwriting을 잘한 결과로 인식하여 재보험사 이익의 일부를 출재사에게 되돌려 주는 것.

Proportional reinsurance (비례재보험)

책임액, 보험료, 보험금이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는 거래방법.

Q

Quota share treaty (비례재보험특약)

모든 대상 계약이 동일한 비율로 출재되는 비례특약

R

Reinsurance commission (재보험수수료)

재보험계약에 있어 출재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출재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상.

Rate on line (ROL)

비비례재보험특약에서 책임한도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하며 이의 역수를 Payback period라고 함.

Reciprocity (교환재보험)

동질 또는 유사한 위험을 가진 특약을 타 보험회사의 비슷한 특약과 상호 교환함으로써 위험의 분산과 거래의 증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재보험 형태.

Reinsurance (재보험)

재보험이란 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자신이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시키는 거래임. 원보험사를 출재사라 부르고 재보험사가 또다시 재보험 처리하는 경우 재재보험이라고 함. 재보험계약은 통상 거래 유형에 따라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분류함.

Reinsured (재보험 출재사)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재)보험회사에 이전시키는 보험회사를 말함.

Retention (보유)

출재사의 보유액. Line은 초과액재보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인데 반하여 보유는 비례, 비비례재보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쓰임.

Retrocession (재재보험)

수재한 재보험계약 중 일부를 다시 다른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것.

Retrocessionaire (재재보험사)

재재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회사.

Risk financing

손실에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위험 이전과 위험 보유로 구성.

Risk transfer (위험 전가)

리스크 자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밖으로 부담시키는 방법.

Run-off system

재보험특약이 해지되는 시점의 미경과보험료 및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재보험사의 책임이 특약에 출재된 원보험계약들의 만기 도래 또는 청산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는 거래 방식.

S

Second surplus treaty (2차 초과액재보험특약)

출재사의 순보유와 1차 초과액재보험특약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이 출재되는 비례재보험특약.

Sliding scale (변동수수료율)

특약 실적에 따라 특약의 출재수수료율이 변동되는 방식.

SPV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회사)

금융 및 증권업계에서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

Statement of account (S/A, 계산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에 실제 거래된 영업명세서를 말함. 여기에는 일정기간 동안 (분기별 또는 반기별) 양 당사자간에 주고 받을 금액이 표시됨.

Stop loss cover (초과손해율재보험)

비비례재보험특약의 한 형태로써 경과손해율을 기준으로 출재사의 손해액을 담보하는 특약을 말함. 예시) 경과손해율 90%를 초과하여 120%까지 보상.

Surplus treaty (초과액재보험특약)

라인(Line)이라 불리는 출재사의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통상 동 보유액의 배수로 표현되는 특약한도액까지 출재할 수 있는 재보험 거래 방법.

T

Technical reserve

원보험과 재보험계정의 장래 언더라이팅 책임에 대한 준비금.

Treaty balance (특약균형)

재보험사가 특약 인수 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특약 책임 한도에 대한 재보험료의 비율을 말함. 비율이 1:1인 특약의 경우 균형이 양호하다고 하며 책임 한도에 대한 재보험료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량 특약으로 판단하나 실제 언더라이팅 시에는 누적위험(Accumulated risk)의 존재유무를 신중히 파악하여야 함.

Treaty limit (특약한도액)

재보험특약에 출재되는 보험금액의 한도액.

Treaty reinsurance (특약재보험)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에 미리 재보험 거래 조건을 정해놓고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출재사는 동 조건에 해당되는 개별 보험계약들을 계속적, 자동적으로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이들을 수재하는 재보험 거래 방법.

U

Underwriting (언더라이팅)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인수 시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

Underwriting results (영업수지차)

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 – 순수수료.

Underwriting year (인수연도)

보험계약이 인수된 연도.

Unearned premium reserve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회사가 거수한 보험료 중 아직 책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립금.

W

Working cover

비비례재보험특약(Excess of loss cover)에서 상대적으로 재보험금 지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손해액 Layer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와 대칭되는 계약 형태로는 Catastrophe cover가 있다.

Written premium (수입보험료)

일정기간 중 유효한 보험증권에 대하여 영수한 보험료. 거수 보험료.

주요 재보험 Wording

Arbitration Clause (중재 조항)

계약 당사자간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중재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총 두 명의 중재인이 선임되어 그 두 명의 동의 아래 심판관(Umpire)을 선임하게 되는데, 두 명의 중재인 중 한 명은 출재사가, 나머지 한 명은 재보험사가 선택하게 됩니다.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separate contracts between the Reinsured and the Reinsurer (hereinafter called "the parties") hereto and arbitration hereunder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commencement of any action at law.

1) All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including its formation and validity, and whether arising during or after the period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ferred to the arbitration tribunal in the manner hereinafter set out.

2) Unless the parties agree upon a single arbitrator within thirty days of one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the other for arbitration, the claimant (the party requesting arbitration) shall appoint his arbitrator and give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respondent. Within thirty days of receiving such notice the respondent shall appoint his arbitrator and give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claimant, failing which the claimant may apply to the appointer hereinafter named to nominate an arbitrator on behalf of the respondent.

3) Before they enter upon a reference the two arbitrators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Should they fail to appoint such a third arbitrator within thirty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respondent's arbitrator then either of them or either of the parties may apply to the appointer for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arbitrator. The three arbitrators shall decide by majority. If no majority can be reached the verdict of the third arbitrator shall prevail. He shall also act as a chairman of the Tribunal.

4)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consist of persons employed or engaged in a senior position in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writing.

5)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have power to fix all procedural rules for the holding of the arbitration including discretionary power to make orders as to any matters which it may consider proper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with regard to pleadings, discovery, inspection of documents, examination of witnesses and any other matter whatsoever relating to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and may receive and act upon such evidence whether oral or written strictly admissible or not as it shall in its discretion think fit.

Cash Loss Clause (즉시불보험금 조항)

출재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때, 자금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에게 즉시 재보험금 청산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The Reinsured shall send advice to the Reinsurer of all Cash Loss as stated in the Schedule and particulars of the settlement of every such loss and its expenses shall be forwarded as early as possible. Loss settlements shall be done in account but in case of Cash Loss, the payment of such share shall be made within 3 weeks after application thereof has been made by the Reinsured. The proof of the loss amount due by the Reinsured is furnished by means of loss report, if possible.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Clause (특약 개시 및 종료 조항)

재보험특약의 효력 개시일 및 종료일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비례재보험 특약은 원보험계약자 소재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비비례재보험특약의 경우 출재사 소재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특약 종료일 기준 최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특약은 재보험료 미청산, 즉시해지조항(Sudden Death Clause)에 규정된 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on the date as stated in the Schedul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either party, giving the other no less than ninety days' notice in writing by registered letter, fax or cable, to expire on the 31st December of any year. The Reinsurer sha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all insurance coming withi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granted or renewed by the Reinsured.

Currency Clause (통화 조항)

Currency Clause는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통화 및 그 환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국내 특약에서 통화가 원화로 통일되지 않은 경우, 출재사와 현지 원보험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손해액 산정 날짜에 rate of exchange ruling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n the event that the Reinsured cedes any business with currencies other than KRW the limit hereunder shall be determined by converting those currencies into KRW at the rate of exchange pre-set by the Reinsured and their domestic insurers for the running of proportional treaties. Should a loss occur on any such currency acceptance, this Reinsurance should apply the rate of exchange ruling on the date of settlement of the loss.

Errors & Omissions Clause (착오 및 누락 조항)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도치 않은 오류, 누락 사항, 이행 지체 등이 발견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된 경우, 재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 또는 계산서 송부 지연에는 적용되지만 사내 조직상 문제, 고의적인 사기행위, 판단 오류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y inadvertent errors or omissions on the part of either the Reinsured or the Reinsurers shall not relieve the other party from any liability which would have attached hereunder, provided that such errors or omissions shall be rectified as soon as possible after discovery. Nevertheless,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held to override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no liability shall be imposed on the other party greater than would have attached hereunder had such errors or omissions not occurred.

Hours Clause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의 Catastrophe excess of loss cover에 포함되는 조항으로서 폭풍, 지진, 해일, 폭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개시 후 어느 시점까지를 하나의 사고로 볼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Hurricane, Typhoon, Windstorm, Tornado, Earthquake, Tidal Wave 및 Volcanic Eruption과 같은 자연재해와 Riot, Civil Commotion과 같은 소요 사태의 경우 발생 시점부터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고가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사고로 정의합니다.

As respects the perils of natural catastrophes, accidents, disaster etc., all loss or losses sustained by the Reinsured, including losses ensuring from other perils covered hereunder following as a direct result of the perils named in the contract, occurring during a period of 72 consecutive hours and caused by the same even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arisen from one loss occurrence.

Insolvency Clause (파산 조항)

Insolvency Clause는 출재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해당 출재사와 계약을 맺은 재보험사들의 인수 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는 조항입니다. 출재사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클레임 청구가 발생한다면, 출재사는 청산인, 파산 관재인, 또는 법정관리인을 통해서 적절한 (reasonable)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재보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보험사가 해당 클레임에 대해 손해사정 또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사의 경비로 충당하며, 추후 출재사 파산에 대한 법적 승인 절차 중 청산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보험금 지급은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에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상에 재보험금직접청구조항 (Cut Through Endorsements) 포함 시 보험계약자가 재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하여 출재사의 보상책임을 재보험사가 승계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재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The reinsur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ayable by the Reinsurers on the basis of the liability of the Company under contract or contracts reinsured without diminution because of the insolvency of the Company.

It is further agreed and understood that in the event of insolvency the Company, the liquidator(s) or receiver(s) or statutory successor of the Company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the Reinsurers of the pendency of a claim against the insolvent Company on the policy or policies reinsure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such claim is filed in the insolvency proceeding; that during the pendency of such claim, the Reinsurers may investigate such claim and interpose, at their own expense, in the proceeding where such claim is to be adjudicated any defense or defenses which they may deem available to the Company or its liquidator(s) or receiver(s) or statutory successor; that the expense thus incurred by the Reinsurers shall be chargeable subject to court approval against the insolvent Company as part of the expense of liquidation to the extent of proportionate share of the benefit which may occur to the Company solely as a result of the defense undertaken by the Reinsurers.

Where two or more Reinsurers are involved in the same claim and a majority in interest elects to interpose defense to such claim, the expense shall be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Reinsurance Agreement as though such expense had been incurred by the Company.

Loss and Loss Adjustment Expense Clause (보험손해 및 손해사정비용 조항)

손해사정 관련 처리 사항에 대한 결정은 출재사의 권한이며, 재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대한 인수 비중만큼 손해사정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The Reinsured therewith shall settle any loss or claim or compromise thereof and all expenses in connection and such settlement shall be unconditionally binding on the Reinsurer providing that it is with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policy and this Agreement. The Reinsured may at its sole discretion commence, continue, defend, compromise, settle or withdraw from action, suits and prosecutions and generally do all such matters relating to any loss or damage which in its judgment may be beneficial and the payment of the expenses including legal charge, cost of expert of opinions and survey fees in connection therewith (excluding salaries paid to officials permanently employed by the Reinsured and other internal administrative costs) shall be shared by the Reinsurer in due proportion to its interest.

Net Retained Lines Clause (순보유분에 대한 담보 조항)

비비례재보험특약에서 사용되는 조항으로 재보험사의 담보 대상은 출재사의 정미보유분에 국한하며, 타 재보험사가 재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재보험사의 책임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This Contract applies only to that portion of any insurance or reinsurance which the Reinsured retains net for its own account. The Reinsured's Ultimate Net Loss (and thereby the Reinsurers' liability hereunder) shall not be increased by reason of the inability of the Reinsured to collect from any other Reinsurers, any amounts which may have become due from them, whether such inability arises from the insolvency of such other Reinsurers or otherwise.

Offset Clause (상계 청산 조항)

Offset Clause란 출재사와 재보험사 사이의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반환금 등 모든 재무적 거래 상 지불 금액에 대해서 상계 청산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한 예로, 출재사 A가 재보험사 B에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B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A 또는 B는 두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청산을 하면 됩니다. Offset Clause는 출재사와 재보험사가 동 조항을 삽입한 재보험특약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ceding company or the reinsurer may offset any balances, whether on account of premium, commission, claims or losses, adjustment expense, salvage, or any other amounts due from one party to the other under this agreement.

Reinstatement (복원조항)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에서 2회 이상의 전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손에 의하여 담보 한도가 소진될 경우 출재사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사전에 합의된 횟수 내에서 소진된 한도액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In the event of a claim under this Agreement, it is agreed that the amount of liability hereunder is reduced from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oss by the sum payable on such claim. However, the amount so exhausted is immediately reinstated from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oss.

Sudden Death Clause (즉시 해지 조항)

Sudden Death Clause는 이미 체결된 재보험특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 출재사의 매각, M&A, 대주주 변경
- 출재사의 납입 자본금 감소
- 출재사의 파산 및 청산
- 특약 상 출재사의 보유분에 대한 별도의 재보험계약 체결

상기에서 규정된 사항 발생시 출재사는 재보험사에게 즉시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통지의무 미 이행시 재보험사가 문제를 인식한 즉시 계약 해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hould either party at any time

(a) Lose the whole or any part of its paid up capital or becomes insolvent

(b) Go into liquidation whether voluntary or compulsory or suffe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c) Amalgamate with or pass under the control of any other Reinsured or Corporation.

Then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forthwith at any time by giving notice in writing by registered letter to the other party. However, if either party terminates this Agreement without any justified reasons, the other party may lay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s.

Treaty Exclusion Clause (특약 출재 제외 위험 조항)

재보험특약을 체결할 때 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이나 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풀에서 담보하는 사항, 전쟁과 같은 특수위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재해 리스크 등에 대한 출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Nuclear Incident Exclusion Clause (원자력 사고 제외 조항)

원자력 위험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원자력보험풀(Pool)을 통해 담보되고 있으며, 각 풀은 여러 보험회사들이 회원이 되어 담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보험특약에 원자력 위험이 포함되어 출재되는 경우, 일부 재보험사 및 재보험시장에는 관련 리스크가 이중으로 출재되어 누적됨에 따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자력 위험은 Nuclear Incident Exclusion Clause를 통해 재보험특약 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Nuclear Incident Exclusion Clause – Physical Damage

This Agreement shall exclude Nuclear Energy Risks whether such risks are written directly and/or by way of reinsurance and/or via Pools and/or Associations.

For all purposes of this Agreement Nuclear Energy Risks shall mean all first party and/or third party insurances or reinsurances (other than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 respect of:

(1) All Property on the site of a nuclear power station. Nuclear Reactors, reactor buildings and plant and equipment therein on any site other than a nuclear power station.

(2) All Property, on any si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ites referred to in (1) above) used or having been used for:

(a) The generation of nuclear energy; or

(b) The Production, Use or Storage of Nuclear Material.

(3) Any other Property eligible for insurance by the relevant local Nuclear Insurance Pool and/or Association but only to the extent of the requirements of that local Pool and/or Association.

(4)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o any of the sites, described in (1) to (3) above, unless such insurances or reinsurances shall exclude the perils of irradiation and contamination by Nuclear Material.

Except as undernoted, Nuclear Energy Risks shall not include:

(1) Any insurance or reinsurance in respect of the construction or erection or installation or replacement or repair or maintenance or decommissioning of Property as described in (1) to (3) above (including contractors' plant and equipment);

(2) Any Machinery Breakdown or other Engineering insurance or reinsurance not coming within the scope of (1) above;

Provided always that such insurance or reinsurance shall exclude the perils of irradiation and contamination by Nuclear Material.

2. Pollution Exclusion Clause (오염 사고 제외 조항)

최근 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및 관련 손해배상액 증가 추세에 따라 오염 사고 담보력 공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재보험특약에 오염 사고 담보 제외 조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Pollution/Contamination Exclusion Clause

> This agreement excludes any loss arising from Pollution or Contamination except (unless otherwise excluded)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insured caused by Pollution or contamination which itself results from a peril reinsured against or any peril reinsured against which itself results from a pollution or contamination. This agreement also excludes any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disposed or dumped waste materials or substances.

3. War Risks Exclusion Clause (전쟁 위험 제외 조항)

전쟁은 원보험계약에서도 면책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위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해당 피해 규모 또한 천문학적인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약재보험에서 전쟁 위험 관련 담보력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위험은 폭동, 내전, 계엄령 선포, 적대행위 등입니다. 재보험특약 체결 시 적용되는 전쟁 위험 제외 조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Political Risks Exclusion Clause

> Any loss or damage occasioned by or through or in consequence, directly or, indirectly, of any of the following occurrences is excluded, namely:
>
> War, invasion, act of foreign enemy,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civil war, permanent or temporary dispossession resulting from confiscation, commandeering or requisition by any lawfully

constituted authority mutiny, civil commotion assuming the proportions of revolu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martial law or stage of siege or any of the events or causes which determine the proclamation or maintenance of martial law or stage of siege Acts of terrorism committed by a person or persons acting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terrorism" shall mean the use of violence for political ends and shall include any use of violence for the purpose of putting the public or any section of the public in fear. In any action, suit or other proceeding in which the Reinsurer alleges that by reason of these provisions any loss or damage is not covered by this Agreement, the burden of proving that such loss or damage is covered shall be upon the Reinsured.

If the indemnification paid by the Reinsured is reduced as a result of measures taken by the public authorities, the obligations of the Reinsurer shall be reduced in proportion. If the Reinsured receives contributions to or reimbursements of its indemnifications from any source whatsoever, as a result of orders by the public authorities, the Reinsurer shall receive a corresponding share thereof.

Ultimate Net Loss Clause (최종정미손해 조항)

최종정미손해액(Ultimate Net Loss)이란 출재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에서 잔존물 처리, 대위권 행사 등으로 회수한 금액과 다른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재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비비례재보험특약에서 출재사의 보유손해액 및 특약한도액의 기준이 됩니다. Ultimate Net Loss Clause는 잔존물 처리 및 대위권 행사 등으로 인한 회수 금액이 보험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최종정미손해액 산정 시, 동 회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term "ULTIMATE NET LOSS"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sum actually paid by the Reinsured in settlement of claims made upon them after taking deduction for all recoveries, all salvages and all claims under other reinsurances or retrocessions whether collected or not and shall include all adjustment expenses arising from the settlement of claims other than the salaries of employees and the office expenses of the Reinsured. All salvages, recoveries or payments recovered or received subsequent to a loss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as if recovered or received prior to the aforesaid settlement and all necessary adjustments shall be made by the parties hereto. Provided always that nothing in this Clause shall be construed to mean that losses under this Agreement are not recoverable until the Reinsured's ultimate net loss has been ascertained.

코리안리와 함께하는 **재보험 이해**
Reinsurance & Korean Re

초판발행 2013년 12월 31일
재판발행 2021년 6월 3일
발 행 인 원종규
발 행 처 코리안리재보험㈜ 보험금융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Tel. 3702 - 6000
Fax. 3210 - 8805

비매품
* 본서의 무단 전재 · 복사를 금합니다.

KOREAN RE